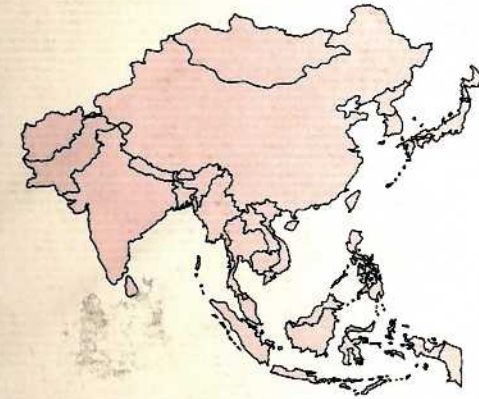


Mc.d.5

세계 인권선언 5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International Symposium Commemo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아시아의 여성인권 : 무력갈등과 성폭력

Women's Human Rights in Asia : Violence against Women in Armed Conflict



세계 인권선언 5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아시아의 여성인권 : 무력갈등과 성폭력

국회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 · 한국여성의 전화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에베르트재단 · 미국친우봉사회

세계 인권선언 5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는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재원의 일부를 지원받았습니다.

국회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 · 한국여성의 전화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에베르트재단 · 미국친우봉사회
Associa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Studying the 'Comfort Women' Issue · Korea Women's Hot Line ·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 Friedrich-Ebert-Stiftung ·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세계 인권선언 5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International Symposium Commemo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아시아의 여성인권 : 무력갈등과 성폭력

Women's Human Rights in Asia : Violence against Women in Armed Conflict



◎ 일시 : 1998년 9월 16일 -17일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 주최 : 국회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모임 ·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에베르트재단 · 미국친우봉사회

차례

◎ 취지 및 일정 · 7

◎ 발간사 · 11

◎ 축사 : 박준규(국회의장) · 12

박상천(법무부 장관)

윤후정(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 발제

【주제발표】 전쟁과 여성인권

— "군사적 분쟁시 여성의 인권" · 16

테오 반 보벤(Theo Van Boven/네덜란드 매스트리히트대학 교수,
유엔인종차별위원회 위원)

【현황보고 1】 최근 아시아의 무력갈등과 여성폭력의 피해

— "여성에 대한 폭력-남아시아의 경험"(스리랑카) · 27

니말카 페르난도(Nimalka Fernando/반차별·인종주의 국제운동본부회장)

— "무력분쟁지역에 있어서의 여성의 상황-캄푸치아, 타일랜드"(타일랜드) · 29

비라다 쉘스왈스디(Virada Somswasdi/태국 치앙마이대 여성학센터 소장)

— "최근 아시아의 무력갈등과 여성폭력의 피해-한국의 경우"(한국) · 30

정진성(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실행위원, 서울대 교수)

— "무력분쟁지역에 있어서의 여성의 상황-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현황보고 2】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각국의 의회·정부의 활동

—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대만정부의 활동"(대만) · 37

씨에 치타(Hsieh, Chi-Ta/국회의원, Hualien 대법원 재판관 역임)

Content

- ◎ Purpose of the Symposium · 61
- ◎ Publication Address · 66

[Keynote Speech] War and Women Rights

"Women's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 : Theo van Boven(Netherland) · 68

[Report I : Report on Women 's Human rights during war in Asia]

"Violence Against Women - South Asian Experiences"(Sri Lanka) : Nimalka Fernando · 83

"Situation of Women in Armed Conflicts: Burma, Kampuchea, and Thailand"(Thailand) · 85

Virada Somswasdi

"Recent Armed Conflicts and Afflictions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Asia : Korean Case" (South Korea) · 86

Chung Chin-sung

"Violence Against Women-Indonesia" · 95

[Report II : Report on A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other government on the 'comfort women' issue]

"The Activities of Taiwanese Government for the settlement of the issu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Hsieh, Chi-Ta(Taiwan, congressperson) · 96

"The Activities of Japanese Diet Members for solution of the issu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Yoriko Madoka(Japan, Seneta) · 97

"The Activitie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for the settlement of the issu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국회의 활동"(일본) · 38

요리코 마도카(Yoriko Madoka/국회의원, 현대가족문제연구소 소장)

—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활동(한국) · 40

천정배(국회의원, 국회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 회원)

[종합토론-아시아에서의 전쟁과 성폭력문제 해결방안]

— "아시아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국가(국회)의 역할"(한국) · 43

이미경(국회의원, 국회 일본군'위안부'연구모임 대표)

— "기본 인권과 도덕적 지도력"(독일) · 46

클레어 마린펠트(독일 에베르트 재단)

— "여성인권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한국) · 51

신혜수(한국여성의전화연합 회장)

— "여성의 인권에 관련된 정보통신과 교육의 활동"(필리핀) · 52

루즈 마티네즈(Luz Martinez/Isis International 마닐라 연구지원 매니저))

— "비인도적 범죄의 해결과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네덜란드)

테오 반 보벤(Theo Van Boven/매스트리히트대학 교수, 유엔인종차별위원회 위원)

아시아의 여성인권 : 무력갈등과 성폭력

Slavery": Chun Jung-Bae(Korea, congressperson) · 99

[Plenary: Presentation]

"The Role of the Nation(National Assembly) for he Promotion of Women's Human Rights in Asia" · 104

Lee Mi-Kyung(Korea National Assembly Member,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Association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in the National Assembly)

"Fundamental Rights and Moral Leadership" : Claire Marienfeld(Friedrich-Ebert-Stiftung) · 108

"The Role of NGOs for he Promotion of Women's Human Rights in Asia" · 116

Shin Hei-soo(Korea, Representative, Korea Women's Hot Line)

"Role of Education and Media in Women's Human Rights" · 117

Luz Martinez(Philippine, Isis International Research and Advocacy Manager)

1. 세미나 개최 취지

아시아에서의 인권상황 특히 여성에 대한 인권은 매우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매춘, 인신매매, 강간 등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전쟁 중에 이루어진 성폭력은 아직도 진상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이러한 인권유린 문제는 가부장적 문화가 뿌리깊게 지속되고 있으며,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민주주의의 낙후성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2차대전 중 '위안부'범죄, 생체 실험, 강제 징용 등 온갖 전쟁범죄·비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일본이 과거 범죄를 진실 되게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전쟁범죄에 대한 진상 공개와 법적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은 채 여전히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데서 아시아의 인권의 낙후성이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인권과 평화의 문제는 한 나라 안에서 해결될 수 없으며, 국제 규범에 비추어서 세계 모든 양심적인 세력들의 연대하에서 해결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나 민간단체의 투쟁만이 아니라 정부, 국회와의 협조 하에서 보다 효과적인 진전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간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인권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갖는 것은 의의가 매우 크다. 이번 국제 세미나를 통해 아시아의 여성 인권 현실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파악과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각국 의회의 연대, 의회와 민간단체와의 연대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런 모임이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세미나에 참석한 각국의 참가자들이 자국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희망한다.

2. 일시 : 1998년 9월 15일(화) ~ 17일(목)

3. 장소 : 국회 헌정 기념관 2층 대강당(서울 여의도 국회내), 기타

4. 주최 : 국회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 모임,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미국친우봉사회

5. 해외 초청자

· 주제발표자 : 테오 반 보벤(네델란드) 총 1 명

- 국회의원: 대만, 일본 국회의원 각 1인, 총 2명
- 민간단체 활동가: 스리랑카,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각 1인 총 4명

6. 일정

◎ 9월 15일(화) : 해외 참가자 도착, 주최측과 저녁식사

사회: 신혜수
 일시: 1998년 9월 15일(화) 오후 7시.
 장소: 호텔 홀리데이 인 서울 2층 "진달래홀"
 참여: 공동주최 단체 대표, 외국참가자, 실무 담당자,
 순서: 소개, 생활안내, 식사, 결의문 초안 검토 등

◎ 9월 16일(수) : 국제 세미나 (통역: 김지명, 이상숙선생)

9:00-10:00 접수

10:00-10:45 개회식

사회: 김윤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개회사: 이미경(국회의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 대표)
 축사 1. 박준규 국회의장
 축사 2. 박상천 법무부장관
 축사 3. 윤후정 대통령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1. 윤정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2. 신혜수(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표)
 3. 피터 마이어(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주한협력사무소 소장)

외국 참가자 소개: 사회자

국내 참가자 소개(국회의원, 여성단체장): 사회자

10:45-11:00 휴식

11:00-12:00 주제 발표: "전쟁과 여성인권"(40분)

- 테오 반 보벤(네델란드 매스트리히트대학 교수, 유엔인종차별위원회 위원)
 질의·응답(20분)

12:00-1:30 점심식사: 헌정기념관 3층 식당

일본군'위안부'문제관련 영상자료 상영: 대강당

1:30-2:30 현황보고(1) "최근 아시아의 무력갈등과 여성폭력의 피해"

사회: 이승렬(한국여성의전화연합 국제협력위원장)

1. 스리랑카: 니말카 페르난도(반차별·인종주의 국제운동본부회장)
2. 타일랜드: 비라다 썬스왓디(태국 치앙마이대 여성학센터 소장,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성·법·개발포럼 운영위원)
3. 인도네시아:
4. 한국: 정진성(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실행위원, 서울대학교 교수)

2:30-3:00 질의응답

3:00-3:15 휴식

3:15-4:45 현황보고(2)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각국의 의회·정부의 활동"

사회: 오양순(국회의원,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 회원)

1. 대만: 씨에 치타(국회의원, Hualien 대법원 재판관 역임)
2. 일본: 요리코 마도카(국회의원, 현대가족문제연구소 소장)
3. 한국: 천정배(국회의원,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 회원)

4:45-5:30 질의응답

7:00-9:00 박준규 국회의장 주최 리셉션

사회: 이재희(청주여성의전화 부회장)

장소: 호텔 홀리데이 인 서울 "무궁화홀"

대상: 별도 초청자

순서:

초청사: 박준규 국회의장

건배사: 윤정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식사

살풀이춤: 강혜숙(충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민요: 김애영(민요패 '아리랏요'대표) 아리랑연곡, 새쫓는 소리

맺음말: 사회자

○ 9월 17일(목) : 국제세미나 및 현장 방문

9:00-9:30 접수

9:30-11:00 종합토론 : 아시아에서의 전쟁과 성폭력문제 해결 방안

사회: 지은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실행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 제안토론(9:30-10:30, 각 15분)

1) 여성인권을 위한 의회의 역할 :

이미경(일본군'위안부'문제를 연구하는 의원모임 대표)

보충발언 - 기본인권과 도덕적 지도력 : 클레어 마린펠트(독일 에베르트재단)

2) 여성인권을 위한 NGO의 역할 : 신혜수(한국여성의전화연합회장)

3) 여성인권을 위한 교육과 미디어의 역할 :

루즈 마티네즈 (Isis International 마닐라 연구지원 매니저)

4) 비인도적 범죄의 해결과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 :

테오 반 보벤(네덜란드 매스트리히트대학 교수, 유엔인종차별위원회 위원)

2. 종합토론(10:30-11:00)

11:00-11:15 휴식

11:15-12:30 결의문 초안 발표/ 토론/ 채택

12:30-2:30 세미나 평가 및 향후 연대방안 토론

사회: 이미경(일본군'위안부'문제를 연구하는 의원모임 대표)

통역: 김지명선생

장소: 국회 본청 "귀빈식당"

대상: 주최단체 2~3인, 외국 참가자

2:30-4:00 나눔의집 도착 : 국회 본청앞에서 출발

4:00-6:00 피해자 할머니와의 대화, 영상자료 시청

사회: 양미강(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 (통역: 김지명선생)

6:00-7:30 저녁식사 : 퇴촌 주변 음식점

9:00 호텔도착 : 공식 프로그램 마감

○ 9월 18일(금) 외국 참가자 출국

발간사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우리는 아시아 지역의 여성 인권 현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여성의 인권 신장과 권리 보호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유엔 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며, 법 앞에서 차별 없이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력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비인도적 범죄가 세계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인들의 인격과 권리의 파괴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특별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력 분쟁에서 이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의도된 폭력·강간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무력분쟁에서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특히 여성의 존엄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많은 경우 개인적, 일국적 차원에 거치고, 완전한 해결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큰 지역일수록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한 제재와 해결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연구모임과 민간단체 그리고 미국과 독일의 민간기구가 이 세미나를 함께 준비하여 더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세미나에서 우리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무력 갈등에 대한 완전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인권 교육의 강화, 국내법의 정비 등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평등·평화·인권의 신장을 위한 의회와 민간단체의 협력이 배가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세미나에 참석하시어 훌륭한 기초발제를 해주신 외국의 참가자와 진지하게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집"이 평화와 인권에 관심을 갖는 많은 분들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회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 모임,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미국친우봉사회

축사

박준규(국회의장)

여성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내빈 여러분!

유엔 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우리 국회에서 "아시아의 여성 인권" 무력 갈등과 성폭력"이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를 위해 애쓰신 주최 측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국내 정치가 어지럽고 여야간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국회에서는 44개의 연구 모임이 있어서 의원들이 각자의 관심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념과 헌신의 자세로 가장 열심히 활동해 온 모임 가운데 하나가 이미경의원께서 이끌고 계신 「위안부 문제 의원연구모임」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의 귀한 만남은 이 의원을 비롯한 연구 모임 소속 의원들의 꾸준한 노력의 성과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본인은 국회의 수장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고마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욱 더 고마운 것은 여성의 인권침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 되는 과정에서 제도 권의 관심과 정책보다는 「여성의 진화」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민간단체들의 이니셔티브가 결정적인 추진력으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이로써 우리나라 시민 운동의 새 지평이 열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시아의 여성 인권"의 현주소를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자긍심보다는 답답함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유엔의 선도와 노력 아래 지구촌에서 여성의 권리와 지위는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도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가부장적 전통은 "여성의 권리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가장 초보적인 인식조차 뿌리를 내리기에 너무 한 토양이 되어 왔으며, 수십 년간의 경제 사회 발전과 여성 운동에도 불

구하고 아직도 끈질기게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회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륜과 도덕이 황폐해진 가운데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전쟁과 무력 충돌 속에서 아시아 여성에게 강요된 인간성 말살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진상과 책임 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국민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나라의 젊은 여성들이 일본 군에 의해 강제 동원된 "위안부"로서 처참한 인권 유린의 피해자에 고통받았던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인간애와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 일본의 한 지방법원이 군 위안부 제도는 여성의 인격 존엄에 대한 침범이자 근원적인 인권 문제였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책임 인정과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 지급을 판결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또한 지난 8월에 유엔 인권 소위원회에 제출된 「맥두걸」 보고서의 날카로운 지적과 강력한 권고 사은 인권위원회 결정에 그 내용이 다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그 자체로서 '위안부'라는 미명 뒤에 가리워졌던 아시아 여성의 인권유린의 실상에 대한 국제 여론을 크게 환기시켰습니다.

이러한 진전 하나 하나가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전향적 분위기가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금번 세미나가 주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얻어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에서는 이처럼 원론적인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 나라에서는 경제 위기와 정계의 갈등, 그리고 세계를 긴장시킨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는 지혜와 결의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우리 모두의 자기 성찰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믿습니다.

축사

박상천(법무부장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이와 같이 뜻깊은 세미나가 개최되는 것을 축하드리며, 그 동안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국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의원 연구모임』과 『한국 여성의 전화』, 그리고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독일 『에버트 재단』과 미국 『친우봉사회』를 비롯하여 아시아의 여성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외국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UN이 세계 인권선언을 선포하여 인권의 존엄성과 고귀한 가치를 전 세계에 천명한 지도 어언 50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세계 인권선언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써 왔습니다.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고, 그에 대한 깊은 반성과 개선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된 토의 주제인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의 책임 규명과 올바른 해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양심에 호소해 온 끝에, 참으로 귀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여기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가해 당사국의 책임 문제가 국제적으로 거론되게 되었으며, UN 인권 소위에서는 법률적인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인권이 어느 한 국가의 내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인권의 보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국제 세미나는 매우 뜻깊은 일일 뿐 아니라 인권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의 분야에 있어서도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50년 헌정사상 처음인 여야간의 평화적 정권교체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의 발전

없이 부정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내실 있는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신념 아래 인권의 보호를 최우선적인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였습니다.

법무부도 이에 따라 『질서와 인권이 함께 살아 숨쉬는 사회의 구현』을 법무행정지표로 정하고,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인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1차 여성 정책 기본 계획』의 목표인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그리고 남녀차별적인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98. 1. 1. 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7. 1.부터는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습니다.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을 삭제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한 민법개정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여성인권을 비롯한 국내 인권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인권법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인권위원회』는 광범위한 성차별관행의 불식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선진국 수준으로 이끌어 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인권 단체와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민을 위한 참다운 인권 보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도 적극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인권 신장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 발전과 그 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모두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 단체 관계자 여러분의 여성의 인권을 위한 헌신은 바로 이 나라 민주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적 노력이 국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때, 여러분의 노력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시민 단체 관계자 여러분이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오늘의 행사는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협력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아시아의 여성인 권사에 또 하나의 귀중한 발걸음으로 기록될 것을 굳게 믿으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제발표】

무력갈등하의 여성의 인권

테오 반 보벤(Theo van Boven/네덜란드 매스트리히트대학교수, 유엔인종차별위원회 위원)

서론

올해는 세계 인권선언의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이정표적인 문서는 UN(United Nations)의 일반 모임(general assembly)에 의해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에 대한 성과의 보편적 척도로서" 공표되었습니다. 권리의 역사는, 그것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대다수의 사람들(발언권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착취당하는 사람, 무시되는 사람)을 내버려둔 채로, 지금까지 항상 특권층의 권리에 집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인권선언의 의미는 새로운 시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가 배제(排除)에서 포함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목적의 완성에서 한참 멀리 있습니다. 배제의 양식은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모든 나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나라에서 유지되고 있고, 성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되고 성행되는 또 다른 것에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 대한 인간의 잔혹함, 또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세계의 소중한 자산에 대한 무시가 있습니다. 조직화된 폭력과 더불어 국가간의, 특히, 국경 근처에서의 군사적 분쟁은 커다란 고통을 계속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과거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한가지가 있습니다: 좀더 빠르고, 공들인 보고를 방송 매체가 하고 있고, 인권과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대한 시민 사회 일각에서의 더 큰 이해와 관심입니다. 아시아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이번 심포지움은 이러한 이해와 관심의 실례(實例)입니다. 이 모임은 전세계적인 인식의 건설과 강화 그리고 재현남의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전향하여

UN(United Nations)

저의 발표에서, 저는 UN의 배경과 관점에서 말할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35년이 넘는 기간 진행되는 UN의 인권 프로그램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저는 자주 마음속으로 UN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심을 합니다. 그 기관은 UN 헌장의 첫구절을 구성하는 그러한 찬란하고 영감을 주는 말을 반향하는 더 나은 세상과 더 나은 생활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 구절은: 우리 UN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애에서 두번 일어나서 인류에게 끝없는 슬픔을 가져다준 전쟁의 채찍으로부터 후손들을 수호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인권과 존엄성 그리고 개인의

가치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강국과 약국에 대한 동등한 권리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 와 같습니다. 제 자신의 가슴속에 있는 이상주의자는 그러한 말들에 의하여 고무될 수 있습니다만, 제 마음속의 지나간 35년동안 점점 슬퍼지고, 현명해진 회의론 자는 그러한 말들과 청사진을 철저한 미사여구로 평가하고 심지어는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심의 순간이 있고, 우리는 모두 희망과 상상의 기간과 실망과 체념의 순간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UN의 진실 발견 임무를 수행하면서 겪었듯이, 여전히 UN을 수호자와 지지자로 바꿀 수 있는, UN이 부정(不正)한 양식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고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를 버리지 말아요"라는 절박한 요청과 함께 UN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러한 힘에 대하여 충분한 신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UN을 강하게 해주고, UN이 유지되고 봉사할 이유를 수호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힘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나아진 점

저에게 주어진 주제로, 예를 들자면 무력 분쟁 시의 여권 같은,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제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흐름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믿는 두 가지 발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 첫 번째 발전은 최근에 있어서의 ① 인권에 대한 성적인 면과 그리고 그 성적인 면을 인권 운동에서 핵심 부분으로 만들려는 노력에 대한 강조입니다. 1995년 9월 15일 베이징 선언에서 그것을 확실하고 강하게 했습니다. 바로 "여성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이다."입니다. 인권에 대한 노력에서 점점 명확해 지고 있는 두 번째의 발전은 인권 침해를 사실로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 저편에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 살아남은 사람들과 그들의 권리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그들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 ① 인권에 대한 성적인 면과 그리고 그 성적인 면을 인권 운동에서 핵심 부분으로 만들려는 노력에 대한 강조입니다. 1995년 9월 15일 베이징 선언에서 그것을 확실하고 강하게 했습니다. 바로 "여성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이다."입니다. 인권에 대한 노력에서 점점 명확해 지고 있는 두 번째의 발전은 인권 침해를 사실로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 저편에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 살아남은 사람들과 그들의 권리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그들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

때때로 인권 운동의 여성화로 일컬어지는 첫 번째의 발전은 특히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인권에 대한 국제 학회와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여성에 대한 제 4차 세계 학회와 같은 여성의 인권을 지구의 인권 프로그램의 주된 논제로 만든 최근 일련의 국제 학술 대회로 나타납니다. 강한 협상 능력을 가진 여성 그룹과 기관들의 연합은 확실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Radhika Coomaraswamy씨 (UN 위원회 특별 보고관)는 하버드 법대 수업에서 몇몇 여성들의 논점과 관심을 말하는 직접적 협상에 대한 재미있는 개론을 하였습니다. 무력 분쟁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법에 대한 적용할 만한 원칙을 강조하는 여성들의 협상을 그녀는 강조하였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의 집단 강간과 살인이 이 과정에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그

여러차례의 회의가 성공적이었다. 인권학원에서 여성의 문제가 중점화되었다는 것이다. 인권운동이 새로운 현상이다. 페미니즘과 여성학은 유럽·미국에선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과격하다는 평가)
그러나 여성단체들이 적극적인 힘을 사용했다니 본다. 때로는 과격함이 전라동 가져온다. 6월

협상은 2차 세계 대전 이전과 그 동안에 있었던 일본군 정신대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의 문제를 다루는 동아시아 그룹을 포함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일로 투쟁하실 것입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강한 근원을 둔 두 번째 협상은 "건강과 전통적인 관습, 가령 여성 성기의 훼손과 결혼 지참금에 관련된 죽음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폭력에 관련된 다른 전통적인 관습들" 같은 것에 대하여 종사하고 있습니다. 북 아메리카와 유럽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여성들로 구성된 세 번째 협상은 "가정 폭력, 강간 그리고 성희롱" 같은 논제에 주목했습니다. 이슬람의 법칙 아래에 있는 여성들로 구성된 네 번째 협상은 "종교적 극단주의에서 발생하는 여권에 대한 침해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남 아시아와 동아시아의 협상은 "여자와 소녀들의 인신매매 그리고 관련된 폭력에 의한 매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의 분야에 의하여 다양화되면서도 "인간의 권리는 반드시 여성의 생활의 모든 단계의 여성의 경험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적에 의하여 통합된 이 광범위한 여성 운동은 중요시되어 왔고, 주목할 만한 현상이며, 인권 운동 전체에서도 주목할 만한 새로운 면입니다.

진실 저편의 사람들

두 번째의 발전은 진실 뒤의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 UN의 인권 위원회는 (보) 조원과 연구 그룹이라는, 광범위하고 크게 일어나는 인권 유린에 대한 조사와 국제적인 인권의 기준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는 일련의 기구를 설립해 왔습니다. 사실과 현상을 확인하고 진로와 수정과 교정의 정도를 가리키는 이러한 보고서는 잠재적으로 인권의 회복과 더 이상의 잘못을 막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은 자주 책임을 말하거나 진실과 현상 뒤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말하는데 실패합니다. 가해자들은 진실 뒤에 숨어서 만족할지 모릅니다. - 그들은 부정하게도 면제와 불순함으로부터 이익을 얻었습니다. - 그리고 제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시되고 침묵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이고 좀더 개인적인 수단과 방법을 법의 규칙에 대한 응급 처방으로서 진실 저편의 사람들에게 정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독일의 주 전범들을 고발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설립된 뉴렌버그의 국제 군법 재판소는 "전쟁 범죄는 모호한 존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하여 저질러진다"고 상당히 정확하게 진술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를 입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숫자나 일용품으로 축소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권 침해의 희생 양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불만 처리 절차가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더 많이 열리게 되었던 환영받는 발전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권 조치 아래에 존재하는 그러한 절차는 점점 더 많이 호소되어졌고, 현재는 유사한 절차가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는 회의와 연관되어 성실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희생자의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기본적인 원칙과 지침이 광범위한 인권 유린에 기인하는 보상과 국제적인 인도주의적인 법률에 의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이 원칙과 지침에 있는 조항 하나를 제가 말하겠습니다. : "국가는 필요로 한다면, 신속하고 확실하게 효과적인 보상을 허용하는 특별한 수단을 받아들일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보상은 잘못된 행동의 결과를 없애고 시정함으로써, 또 침해를 막고 제지함으로써 정의를 보상해야만 한다. 보상은 침해 정도와 남은 피해에 비례하여야 하며, 재산권의 반환, 배상, 복직 및 복권,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입니다.

인권에 대한 커다란 위반의 희생자의 보상받을 권리와 국제적인 인도주의적 법률에 관련된 이일에 제 자신이 깊이 연관되어 있어 왔기 때문에, 만약에 UN의 일반 위원회가 금세기가 끝나기 전에 이 지침과 원칙을 승인하고 동의한다면 많은 대학 동기들과 친구들 그리고 제 자신은 매우 기쁠 것입니다. 이미 현재의 기본적인 입안에서는 그 지침과 원칙은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활용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의 다른 면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의 ^(가장) 표준에 대한 가해자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과 국제적인 인도주의 법안이 점점 증가하는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고소와 처벌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명백하게 국가의 의무입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배고픈 아이가 빵한덩어리를 훔쳐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수천 명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이의 살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독재자에게 정의가 할당되기 보다 쉽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1993년과 1994년의 국제 형사 재판소의 일전의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 대한 확정과 지난 6월에 로마에서 국제 형사 재판소의 법령을 최근에 받아들인 것은 새로운 경향의 지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법률의 제정은 시민 사회의 양심적인 대변인의 강한 지지를 받는 국제 사회의 광범위한 부분의 심각한 국제적 범죄자에 대한 불완전함의 종결과 그러한 범죄를 예방에 기여하길 바라는 희망과 강한 결심이 반영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최근의 발전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력 분쟁 시의 여성의 인권 - 저의 발표의 주제입니다. - 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과 현재와 미래의 세대의 생활에서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남성들의 기존 관념과 우월감

보상과 책임을 위한 표준과 기구를 제자리에 두기 위해서는 여성 운동의 강한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성적으로 특수한 인권 침해와 국제적 인도주의적 법률은 대체적으로 무시되어 왔습니다. 일에 대한 이 상황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공 생활 특히 국가, 금융, 경제계의 합법적인 기관, 국제적 조직 또한 종교 기구들에서 많은 부분이 남성의 특권적 영역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지배하는 규칙과 지도 규범 그리고 이런 영역에서의 행동은 남성들의 시야에서 형

성되었습니다. Radhika Coomaraswamy(UN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특별 보고관)는 그녀의 가장 최근의 보고서에서 그것의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군 조직에 만연한 남성다움의 유행이 본질적으로 반여성적이며 여성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환경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1949년의 전쟁시 시민들의 보호라는 주제와 관련된 제네바 회의에서의 27번 기사를 언급함으로써 전쟁 법에 대한 전형적인 남성의 성격을 묘사하였습니다. 그 제네바 회의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폭력적인 범죄라기 보다는 명예에 대한 범죄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부가 설명하길, "정숙, 순결, 처녀의 개념과 연관된 명예로운 모범을 사용함으로써 여성성에 대한 구태의연한 개념이 인도주의 법 내에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법이나 국제법에서나, 범죄자의 성적 공격은 피해자의 도덕관과 연결되었다. 만약에 강간이 명예나 도덕에 대한 범죄로 인식된다면, 피해자에게는 공통적으로 수치심이 생기게 되고 그 피해자는 집단에 의하여 "더럽다", "망쳤다"로 자주 인식된다.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범죄를 보고하거나 거론할 수 없게 된다." 초남성주의 문화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 있거나 좀더 숨은 형태로 만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성 우월의 많은 경우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성적인 태도, 그리고 성적 모욕과 공격은 독일 나찌가 "최고 민족"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했던 것과 똑 같은 민족주의적 정서와 민족주의적 행동에 의하여 뒤섞여 있습니다. 가장 성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행동의 이러한 수렴 또한 이러한 집적은 무력 분쟁 기간 중에 여성에 대한 많은 폭력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제 2차 세계 대전 전과 그 기간 중에 있었던 일본 황군의 성적 노예에 대한 잔악한 재계산에 의하여 잘 묘사됩니다.

무력 분쟁 시에 발생하는 광범위한 성적 모욕

무력 분쟁 상황과 성적 상관관계는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지고 돌보는 사람 없었던 것이 이제 대중들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은 여성 운동의 주장과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여성 생존자들의 몫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 여성들에 대한 일본 황군의 광범위하고 사악한 성적 착취에 대한 수십 년간의 침묵이 끝나고, 르완다에서의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만행, 대량 학살, 강간 그리고 유괴에 대한 끔찍한 정보와 더불어서 구 유고슬라비아 영토 내에서의 인종 청소의 정책과 행동에 부분적으로 기인한 강간과 강제 임신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한 많은 놀라운 보고서들, 모든 이러한 역사와 여성에 대한 무력 분쟁 시의 폭력의 기술은 양심 깊숙이 충격을 주었고, 지각을 흔들었습니다. 비슷한 행동이 세계의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Radhika Coomaraswamy씨는 그녀의 UN위원회에 제출한 인권에 관한 가장 최근의 보고서에서 철저한 일련의 깊은 비극적 이야기들과 무력 분쟁 기간 중에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의 유형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력 분쟁과 관련된 나

라는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하이티, 인도, 일본, 라이베리아, 멕시코, 중국(티벳), 페루, 르완다, 스리랑카 그리고 미국입니다. 나라들의 이름은 대부분의 경우에 익명이나 모르는 채로 남아 있다가 현재는 UN의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희생된 여성들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통의 광범위한 본질 또한 1997년 가을 도쿄에서 열린 전쟁이나 무력 분쟁 시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국제 학회의 의사록 출판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97년 11월 3일에 거기서 채택한 선언은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의 정신대와 난징에서의 강간,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 중에 있었던 파키스탄 군의 손에 의하여 자행된 수만 명의 여성에 대한 성적 만행, 미국 군대에 의한 베트남 전쟁 중에 있었던 독성 화학 물의 배포를 통한 여성들의 희생, 그리고 더 최근의 것으로, 전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서의 여성에 대한 집단 강간, 인도네시아 군의 동 티모르 점령 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버마의 군사 정권, 회교 근본주의자들의 아프가니스탄과 알제리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미군 기지 근처에서 발생하는 강간, 무력 분쟁의 기간 중의 강제 퇴거."

특별하게 영향을 받은 여성들

베이징 행동 강령은 이미 직접적으로 그리고 특별한 방식으로 여성들과 소녀들과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군사 분쟁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전세계 수백만의 난민들과 내재적인 피난민들을 포함하는 다른 피난민들의 80%정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이징에서 공표 되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무력 분쟁과 테러 행위의 결과로 고통을 겪고 있긴 하지만, 여성과 소녀들은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그들의 성 때문에 특별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분쟁을 획책하는 무리들은 자주 불순하게 강간을 하고 때로는 전쟁과 테러 행위의 전술로서 조직적인 강간을 사용한다. 그러한 상황에서의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침해와 여성들에 대한 폭력의 충격은 모든 나이의 여성들에 의하여 경험된다. 그 여성들은 집과 재산을 잃고, 난민 생활을 하고, 가까운 친척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아야 하고 가족들과 이별해야 하며, 가족들이 분열되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특히 인종청소같은 정책이나 다른 새롭게 나타나는 폭력의 형태의 결과인 살인과 테러 행위와 고문과 원하지 않는 실종과, 성적 노예제와 강간과 성적 모욕과 강제적인 임신의 희생 양이다."

모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막 언급한 행위의 많은 양이 총체적인 인권 위반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많은 양이 무력 분쟁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 인도주의 법에 위반이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여성과 관련된 법의 시행

인권과 인도주의에 대한 법의 시행은 특히 여성들과 소녀들의 기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는, 국내에서나 국제적인 수준에서나, 발표된 기준에서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범법자에 대한 기소와 처벌은 규정보다는 예외였고, 현재도 여전합니다. 그 이유는 전설입니다. 일반적인 양식과 실천은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와 의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뉴렌버그 재판소같이 공정한 상벌을 내리는 경우에도 강간은 일반적인 국제법 하에서 전쟁에 관련된 죄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군사 재판소의 현장에는 강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도쿄 재판소는 몇몇의 일본 군대와 시민들의 고위자들은, 그들이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모욕, 잘못된 대우, 고문, 강간 살인 그리고 다른 잔학한 행위를 막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강간을 포함하는 전쟁범죄에 대하여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1949년의 제 4차 제네바 회의와 1977년의 제네바 회의의 추가 규정까지는 전쟁시에 여성들에 대한 법적으로 뿐이고 실제로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 좀더 명백한 보호 장치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의하여 1993년에 설립된 구 유고슬라비아 문제를 위한 국제 재판소는 재판소의 법에 있는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 그리고 절차에서 성적 공격에 대한 피해자에게 친숙한 규칙을 우선으로하는 규칙 그리고 국제 인도주의의 법의 역사의 돌출구로서 재판소의 증거로서 강간의 즉각적인 포함을 발표하였습니다(2). 또 한가지 말해야 할 것은 헤이그의 재판소에서 증언해야 할 강간과 성적 공격의 희생자들을 돕고 보호하기 위하여 "희생자와 목격자 단위"라는 것이 재판소의 등록소안에 설립된 것입니다. 비슷한 조항이 탄자니아의 아루사에 있는 르완다를 위한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적용되었습니다. 여성들의 협상과 UN의 인권을 위한 고위 관리와 같은 기관들의 능동적인 지원으로 두 특별 재판소와 관련된 이러한 발전은 국제 형사 재판소의 법문에 성적으로 민감한 장치를 만드는 것이 확실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로마에서 열린 국제 형사 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한 외교 협상에 참가해서 저는 일련의 성적인 관점을 명확히 표현하고 무력 분쟁 시에 저질러지는 범죄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보장하는 국제 형사 재판소의 헌법의 면에 관심을 모으는 이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앞서 저는 여기 서울에서 외교 회의와 회의를 이끌어 갈 사전 준비 단계에서 매우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단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국제 형사 재판소

지금부터 저는 국제 형사 재판소의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으로 민감한 요소와 구문을 몇 개 언급하겠습니다.

a) 인간성에 반한 범죄 (조항 7)

"강간, 성적 노예, 강제 매춘, 강제 임신, 강제 불임, 또는 다른 형태의 비슷한 중량의 성적 침해." 바로 이 조항에서 "강제적인 임신"을 정의하는데, 그 의미는 어떤 인구 집단에서의 인종의 비율에 영향을 주기 위한 또는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을 목적으로 여성이 강제적으로 임신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불법적인 제한이다." 그 다음의 문장은 이 정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신과 관련하여 국가법에 영향을 주게 해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헌법에서 "성 혹은 성적"이라는 단어는 사회 전체의 맥락에서 남성과 여성 혹은 2가지의 성을 언급한다고 이해됩니다.

b) 국제적 그리고 국제적이 아닌 무력 분쟁과 관련된 전쟁 범죄 (조항 8)"강간의 허용, 성적 노예제, 강제적 매춘, 강제 임신, 강제 불임, 또는 제네바 회의의 중대한 위배를 포함하는 다른 형태의 성적 침해" 또는 "또한 4가지의 제네바 회의와 일치하는 조항 3의 심각한 위배"이다.

c)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 기소자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다른 믿을 만한 근거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법정에서 글로 되었거나 말로 되어지는 증언을 받아야 한다. (조항 15)

d) 판사의 선정에 있어서 국가 구성원들은,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여,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지만 거기에는 한정되지 않는 특별한 논점에 대한 합법적인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판사를 포함할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조항 37)

e) 기소자의 사무실에는 어린이에 대한 성적인 폭력을 포함하지만 거기에는 한정되지 않는 특별한 논점에 관한 합법적인 전문 지식을 가진 조력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조항 43)

f) 기록원은 법원에 나타날 목격자나 희생자 그리고 그러한 목격에 대한 진술 때문에 위협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보호 수단과 안전 정리, 상담 그리고 다른 적절한 보조를 제공할 "희생자와 목격자의 단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단위는 성적인 폭력에 관련된 심리적 치료를 포함한 심리적 치료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요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항 44)

g) 추가로 특별히 법원은 재판 진행 동안 안전과 신체적 정신적 평안함과 존엄 그리고 사생활에 대하여 희생자와 목격자 그리고 그들의 참가자를 보호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원은 특히 범죄가 성적 폭력이나 또는 어린이에 대한 폭력에 관련되었을 경우에, 반드시 거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 성, 건강, 그리고 범죄의 성격을 포함하는 모든 적절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항 68)

h) 마지막으로 희생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포함된 충실한 법률 규정이다. 법원은 이 영향을 위하여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죄인에게 희생자에 대한 재산 반환, 배상, 그리고 복직을 포함하는 적절한 보상을 규정하는 직접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손해 배상이 희생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한 Trust Fund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다. (조항 79)

결론적으로,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의 성에 대한 관점은 인류애와 전쟁범죄들에 대한 죄의 정의와 독자적인 기소 자의 임무와 판사의 선택과 희생자와 목격자의 보호와 또한 희생자에 대한 법적인 보상에서 그리고 명백하게 재산 반환, 배상 그리고 복직을 포함하는 보상의 권리에서 명백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의 법에 나타난 성적인 면의 인식과 더 일반적으로 로마에서 있었던 UN 외교 회의에서 채택한 국제 형사 재판소를 위한 상당히 좋은 법적인 근거는 만족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재판소의 탄생이 특히 여성과 소녀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야기시킨 국제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향한 단지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판소가 제 역할을 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것의 존재 자체가 궁극적으로 중요할지 모릅니다.

정의와 관련하여 3개의 서로 연관되는 전략들

저의 발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저는 정의와 관련하여 3개의 서로 연관되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방의 전략, 둘째로 범죄에 대한 책임의 전략, 셋째로 복권과 재건의 전략입니다.

군사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사적 분쟁 시의 모욕과 폭력에서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을 위한 수단과 기구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계 평화 협의 사항에서 예방을 위한 외교와 행동이 최고의 우선권을 가져야 합니다. 예방 수단 가운데서 인권과 인도주의 법과 관련이 있는 평화 연구와 평화 교육은 시민사회가 높이 공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10년간(1995-2004)의 인권 교육은 좋은 기회와 교육의 분야에서 이러한 예방적인 수단에 대한 만족과 확실한 의미를 주는 적절한 바탕을 제공합니다. 교육적인 노력은 또한 그들에게 인간 생명과 인간의 고결함을 존중할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특히 군사와 법률 집행 인원의 교육 같은 교육 요소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훈련에는 또한 체계적인 성에 대한 감성 훈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사하는 UN특별 보고관은 상당히 정확하게 충고를 하였는데, 훈련은 국제법상 심각한 범죄로서 성적 공격을 인식하는 법과 조사와 기소의 측면에서 성적으로 민감한 절차에 범위를 정하는 법과 실제로 일을 할 때 성적으로 둔감한 행동을 하게 만들지 못할 구성원들 간의 힘의 내재된 모습에 대하여 말하는 법에 대한 정보와 지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명료한 강조와 동시에 다양한 사회의 문화적 흐름을 받아들이는 교육과 훈련은 예방 전략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범죄에 대한 책임 전략은 여성의 인권을 포함한 인권의 커다란 침해와 국제적인 인도주의 법은

정식으로 조사되어 빛을 받아야만 하는 그리고 범죄자는 기소되어 죄가 발견되면 처벌을 받는 국제법 아래에서의 의무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기소와 처벌이 이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들이긴 하지만 분쟁과 폭력으로 깊은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 세워진 여러 개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 인식되기로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마 훨씬 더 핵심적입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제적 수준으로 범죄에 대한 책임이 범죄 정의 체제의 수단으로서 강화되어진 단계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적인 면은 적용할 만한 기준과 합법적인 절차와 살아남은 피해자들의 보호라는 측면을 완전히 통합하여야만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복권과 재건의 전략은 분쟁 후의 상황에서 재건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사실 예방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권과 재건은 모순과 고통이 그 자체로 반복되지 않게 하는 목적과 영향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쟁 후의 복권과 재건은 특히 경제의 재건, 사회적 복권 심리적 치료, 민주적인 참여의 구성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수단과 봉사를 필요로 한다. 화해와 치료는 이러한 명예 회복과 재건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같은 상징에 의하여 이러한 요소들은 명확히 예방의 전략과 범죄의 책임에 대한 전략과 함께 상호 연결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권리와 합법적인 이해가 인식되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화해와 치료는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강한 신념입니다. 이러한 권리와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해는 배상과 복권, 그리고 만족의 기준에 대한 폭넓은 제3의 것을 포함한 정책과 보상의 표현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권리와 이해를 무시하는 것은 깊은 비탄에 또다른 부정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특히 군사적 분쟁기간동안에의 성적인 침해에 희생양이된 사람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러한 부정은 받아들일 수 없고 끝을 내어야만 한다는 우리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Q: UN 안전의 재판소 판결은 가해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기소와 처벌은 화해와 배상만 생각하여 어떤 보상을 중요한 관점으로 인식. 또는 해결하려한다는 시선도 있다. 재판소에게 책임상 부족해도 많다. 화해도 예방위주의 환들은 화해는 돈이 있어야 한다.

A: 유일한 대응책은 이 사건을 계속 문제화. 우리는 강제적 집행력은 없다. 유일한 방법은 국제적 환기, 여론화, 여론의 압력을 불러 일으켜 국제적 수리적인 능감은 수능.

참고 서적과 근거

- Radhika Coomaraswamy, 국제법의 재설립: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권리로서의 여성의 권리, 하버드 법대 인권 프로그램, 1997
- Radhika Coomaraswamy, 여성에 대한 폭력의 UN특별 보고관, 원인과 결과, UN 문서 E/CN.4/1998/54, 1장 무력 분쟁 시의 여성에 대한 폭력
- Indai Lourde Sajor (ed), 공통의 배경 - 전쟁과 무력 분쟁시의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의 인권에 대한 아시아 본부, 1998.
- Gay J. McDougall, 무력 분쟁기간 중의 조직적인 강간, 성적 노예와 노예와 같은 생활 UN 문서 E/CN.4/sub.2/1998/13.

- 여성에 관한 네번째 국제 회의, 베이징 선언과 행동의 근거, UN 문서.A/CONF.177/20과 Add.1 (1995)
- 국제 법률가 위원회, 인권 침해의 희생자를 위한 보상의 권리, 중요문서 편찬, 1998.
- United Nations, 영원한 국제 형사 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최고 회의를 위한 인권 논문, 15 June 1998.
- United Nations, 국제 형사 재판소의 헌법, A/CONF.183 (1998)

경력

- 네덜란드 University of Maastricht 교수 · 유엔 인종차별위원회 위원, 전 인권위원장
- 민간단체 참여:
 - 국제법률가 위원회(Geneva) 부회장
 - 국제 인권연구소(Strasbourg) 부회장
 - 국제 모든 종류의 차별과 인종주의에 대항하는 운동(Tokyo)이사

Q. 시모노 ... 신법

A. 일본이 신법을 따른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긍정적인. 그러나 이법이 실행될지는 아직 일본 국회에서 논란중.

Q. 무력갈등 예방책 중 즉각적 효력은 정부의 힘이 아닌가.

A. [평화교육, 훈련. 예방 외교 조치 / 정보기관 간기 및

◎ 민간단체 (NGO) . 대화 시작 . 평화 방문 ⇒ 평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 담당

[현황보고 1] 최근 아시아의 무력갈등과 여성폭력의 피해

여성에 대한 폭력 - 남아시아의 경험

니말카 페르난도(Nimalka Fernando/스리랑카/반차별 · 인종주의 국제운동본부 회장)

여성에 대한 폭력은 어떤 형태든 범죄행위이고 사망, 신체적 능력 상실 그리고 정신적인 혼란을 가져온다. 인도에서는 10명중 8명의 결혼한 여자가 폭력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 이 수치는 우리에게 아직도 숨겨진 채로 남아 있는 많은 실제적인 직면해야 할 문제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폭력이 문화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는 여자란 조용히 행동해야 하고, 타락을 감수해야 하고, 보조적인 존재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종교적이고 관습적인 관례는 종종 여성에 대한 억압과 압제를 정당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남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폭력은 신부를 불태우는 것에서부터 결혼 강간에 이르기까지 야만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사티라는 관례는 그것이 법에 의해 금지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여성들은 이를테면 신부가 신랑에게 선물로 치르는 금액과 같은 지참금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죽는다. 종종 여성들은 가난한 부고가 이 금액을 치르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결혼이 실패하면 자살을 한다.

남아시아의 여성들이 처한 상황은 세계 은행이 명한 구조 조정 과정과 세계화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수 백 명의 여성들이 자유 투자 무역 지대에서 근로자로 노동시장에 끌려나 온다. 이 여성들은 한 달에 단지 미화 25 달러를 받기 위해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다. 만약 초과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수입은 이것보다 적을 것이다.

그 이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인권 감시 단에 의해 잘 기록되어있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주된 관심사는 스리랑카와 인도를 가로질러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서의 계속되는 전쟁 상황의 결과로 인한 여성에 대한 끊임없는 괴롭힘이다. 군국주의화의 과정이 여성에 대한 극도의 폭력을 가져온 인도의 여러 지방에서는 몇몇의 갈등이 있다.

여성들은 소수 사회의 일원으로서 시달림을 받을 뿐 아니라 난민으로서 퇴거에 직면하고 있다. 분쟁 지역에서 여성은 가장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다. 소수 사회의 여성은 강간에 직면한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는 다수의 힘에 의해 수치스럽게 된다.

내 나라인 스리랑카처럼(인도와) 국경에 접해 있는 여성들과 또한 타이 국경 지대의 미얀마 여성들의 경험들은 상세히 할 필요조차 없다. 스리랑카에서는 전쟁이 계속되는 지역의 과부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홀로된 여성들은 다치기 쉬워진다.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스리랑카 북부 중앙 지역에 있는 한 마을의 여성들의 60%가 성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크리산티 쿠마라스와미라는 젊은 학생은 자프나 라는 곳의 태밀 지역사회에 속해 있었다. 그녀는 하학후 검문소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들과 한 이웃 사람이 그녀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머니, 남자 형제, 그리고 이웃 또한 사라져 버렸다. 나중에 그녀는 강간당해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다른 사람들 또한 죽음을 당했다.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압력 때문에 정부가 기여들어 관련된 장교들을 밝혀 내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피고들은 투옥을 선고 받았다.

경력

- 반차별 인종주의 국제운동본부(International Movement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Racism) 회장

Q. 무력갈등상태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차이
 A. 폭력 주체 정부, 비정부
 - 대부분 폭력 자행에서 남·여의 차이를 들 필요는 없다 (인권). 어떤 폭력도 반대.
 다만 성적이 차원이 폭력에 포함될 때 여성 인권의 차원에서
 구별이 된다 (여성운동)
 또한 전투상태에서 폭력도 차원이 좀 틀려진다.
 과거 여성의 권리는 남성의 시각에서 파악되어 왔다.
 그동안 이 부분의 제대로 된 실행이 이루어 지지 않았
 포함되어 추가되고 있다.) 남성의 인권상태에서, 남자가 여성은 맘대로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 / 성은 바람으로 본다. 폭력이 대상이 된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리치에 대한 운동)
 / 인종-계급 때문이 폭력이 나타남.
 남성 "

무력 분쟁 지역에 있어서의 여성의 상황 : 캄푸치아, 태일랜드

비라다 섬스와스디(Virada Somswasdi/태국 치앙마이대 여성학센터 소장)

개요

본 연사는 미얀마, 캄푸치아, 태일랜드 등의 세 동남아시아 국가의 무력 분쟁 지역에 있어서의 여성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간단한 묘사를 하려고 한다. 그것은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 문제와 이 권리를 침해하고 보호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여성 기구들에 대한 활동과 정책 개입에 대한 권고안 또한 제시될 것이다.

경력

1974년 코넬 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여성학자

현직 :

- 치앙마이대 정치학과 법학 조교수
- 치앙마이대 여성학센터 소장(1986년부터)
- 여성과 법률, 그리고 발전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포럼(ATWLD) 설립자. 현 지역 조정관
- 태일랜드 국립 인권침해 진상규명 부위원회 위원

【현황보고 1】 최근 아시아의 무력 갈등과 여성 폭력의 피해

최근 아시아의 무력 갈등과 여성 폭력의 피해 : 한국의 경우

정진성(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실행위원, 서울대 교수)

I 무력 갈등으로 인한 성폭력과 가부장제

인류역사상 전쟁은 가장 비참한 상태를 야기하면서도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왔다. 특히 20세기에
 는 지난 400년동안 보다 전쟁 횟수가 4배나 될 뿐 아니라 전쟁의 형태도 극히 파괴적이 되었다. 최근
 냉전이 끝나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간의 전쟁은 가라앉아 세계 사회는 안전한 상태를 이
 루게 된 듯이 생각되었지만, 새로운 무력 갈등이 국가들 간에, 민족 집단간에 생겨나고 있다. 이 전
 쟁이 가져오는 참상은 엄청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의 피해는 가장 심각한 것이다. 예컨대
 1992년 6월 70명의 소말리아 난민이 무장 갱에게 살해되었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였
 다. 전쟁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가 여성과 어린이인 것은 단순히 이들이 약자라는 것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은 이들을 체계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만들어 온 가부장제와 긴밀히 얽혀 있는 것이다.
 전쟁은 가부장제가 폭력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성이 여성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기초
 적 메커니즘인 성폭력은 영토를 정복하려는 군대의 행동에 비유할 수 있다. 또한 무기는 남성적 정
 체성의 한 중요한 요소이며 가부장제를 기능 하게 하는 핵심적 요소이기도 한다. 전쟁 상황에서 이
 모든 폭력적 요소는 여성에게 가공할 폭력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1) 성폭력의 주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형태는, 전통적인 형태, 즉 국가간의 싸움, 국가 형성 과정에서 일어
 나는 전쟁, 즉 민족 독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민족
 집단 간, 또는 종교 집단간의 내전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한국의 경우에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의 무력 갈등은 거의 없으며, 대
 신 타 민족의 침략에 의한 피해와 국내에서 국가의 폭력에 의한 피해가 무력 갈등의 피해로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 여성이 가장 큰 피해자인 것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무력 갈등에서 타민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의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미군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의 폭력으로는 1948년 제주
 4.3사건을 비롯한 1945년 해방 직후 일어난 여러 사건들과 1980년의 광주 사건 등에서 일어난 성

폭력이 있다. 이 글에서는 위 네가지 경우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고찰을 할 것이다.

(2) 성폭력의 유형

전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대표적인 형태는 물론 강간이다. 강간은 무규칙적 강간과 제도화된 강
 간, 그리고 매춘 형태의 성폭력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중 제도화된 강간으로 분류한 성폭력의
 형태는 강제에 의한 매춘 또는 상습화된 강간의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도화의 정도는 각기 다
 르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폭력이다. 그것은 국가와 군대가 사설 업자의 도움
 을 받아 행하는 전시 성폭력의 극단을 이루는 것이다. 구유고지역에서의 민족 청소도 타민족에 대
 해 행한 매우 극심한 성폭력이었으나, 국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된 제도적인 폭력이 아니라 무
 규칙적인 강간이었다. 매매춘은 강제성은 덜하나 군대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폭력성이 크
 게 가해진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미군에 의한 성폭행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
 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간 이외에도 여성들이 전시에 당하는 피해에는 강제노동, 가족잃음, 정신적 후유증, 부상, 집잃
 기 등 남성들이 당한 것과 동일한 피해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앞서 논의한 가부장제의 메카니
 즘에서 남성이 당한 것보다 정도가 심하다.

(3) 무력 갈등 후의 가부장제의 폭력

무력 갈등 시에 가부장제가 폭력으로 실현되는 것에 더해, 갈등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그후의 가
 부장제의 대응은 더욱 큰 폭력으로 여성을 억압한다.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까지 낙인을 찍는
 것이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성폭력이다. 따라서 폭력의 피해가 일생을 지속하여 가중되는 것이 성폭
 력의 피해인 것이다.

오랜 유교문화의 전통을 가진 한국의 경우, 가부장제의 위력은 보다 강하다고 보여진다. 국제법
 률가협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의 보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전쟁 후의 삶에
 나타난 한국과 필리핀 피해자들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동원 당시의 피해자들의 조건이
 달랐기 때문 뿐 아니라 양국의 가부장제의 무게의 차이가 드러내는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이제 한국에서 지금도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무력 갈등의 예로서
 국가 폭력이었던 1948년 제주 4.3 항쟁과 1980년 광주 민주 항쟁, 그리고 주한 미군에 의한 폭력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차례로 논의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문제들은 각기 일어난 시기가
 다르지만 최근 1990년대에 들어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시민 운동, 특히 여성 운동이 발전

3가지의 무력 갈등
 '46 제국항쟁
 '80 광주
 타민족에 의한
 국한이론
 위안부

한데 힘입어 일제히 그 전모를 밝히는 작업이 진전되고 있다. 그 동안 피해 사실은 가부장제 뿐 아니라 냉전 체제하의 독재정치 속에서 은폐되고 침묵이 강요되어 왔던 것이다. 이것은 이 모든 무력 갈등의 희생이 치유되는 것과 앞으로 이러한 무력 갈등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모두, 강대국 패권주의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과 사회의 민주화와 가부장제의 철폐를 위한 시민 운동과 그것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II. 제주 4.3 항쟁 (1948년)

35년간의 일제 식민지 시기를 거쳐 1945년 해방이 된 한국은 1948년 남한 단독의 정부가 수립 될 때까지 미군정의 지배하에 있었다. 4.3이란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하여 미군정 경찰과 서북 청년 단 등에 대해 제주도 무장대가 공격을 개시했던 1948년 4월 3일을 가리킨다. 그러나 4.3의 도화선은 그전으로 올라간다. 1947년 3월 1일 제주 읍내에서 3.1절 시위 군중에게 경찰이 발포, 짓밟아낸 여인, 농부 등 관람 군중 6명이 사망한 것이 제주 도민을 격분시켰던 것이다. 3월 10일부터 총파업이 전개되었으며, 미군정은 본토의 용원 경찰과 서북 청년 단원을 끌어들여 무력으로 이를 진압하기 시작하여 2500여명이 구금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948년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좌파 계열의 조직에서 4월 3일 봉기를 일으킨 것이다. 봉기라고는 하지만 무장대 수가 300-500명에 불과했고 무기도 빈약했다. 그로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에 금족(禁足)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6년 6개월 동안 제주도 인구의 약 1/8이 경찰과 극우 서북 청년단1)에 의해 사살되었으며, 그밖에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당시 무장대의 숫자를 생각할 때, 사상자의 대부분이 무고한 불가항력의 양민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소위 '초토화작전'이라고 불리는 1945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3월까지의 4개월 동안 양민 학살은 집단 광기라고 할만큼 극에 달했다.

외부에 전혀 그 상황이 알려지지 않은 채 일어난 이 사건에서 여성의 피해도 엄청났다. 양 3만명으로 알려진 사망자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이 남자 9,192명, 여자 2,443명이나, 살아남은 여성 피해자의 고통은 기구하게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성폭력 때문인 것이다. 여성이 당한 피해는 고문과 성폭행, 토벌대와의 강제결혼, 및 이후 가족을 잃은 고통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야 입을 열기 시작한 피해자들의 증언은 실로 놀라운 사실들을 말하고 있다. 고문은 성폭행과 연결되어 있었고, 회유책으로 토벌대, 순경 등과 결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1) 서북 청년단은 1946년 11월 이북 출신 청년 단체가 통합하여 결성된 것으로 '빨갱이'에 대해 극도의 분노를 가진 채 제주도 뿐 아니라 전국에서 활약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사망에 이른 여성이 많았던 것이다. 당시 성폭행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말하는 사실 중 하나로, 1948년 12월 14일 밤, 표선면 토산리에 들이닥친 토벌대의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들은 주민을 달빛에 비추어 가며 150여명의 젊은 여자들을 불러 내갔으며, 닷새후 이들은 전부 총살되었다. 이들이 이 여자들에 대해 성폭행을 한 후 사살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무차별적인 강간은 이 기간 계속되었으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젊은 남녀를 불러내 '그 짓'을 강요하기도 했고, 임신한 여자, 갓난아이를 가진 여자 등 가리지 않고 고문과 사살을 했다. 가족을 인질로 강제 결혼을 감행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제 결혼을 당한 여자나, 강간당해 아이를 낳은 여자들은 '폭도 각시', 그 아이는 '폭도 새끼'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야 했다.

III. 1980년 광주 민주 항쟁

광주 민주 항쟁은 1960년의 4월 혁명 이후, 군부 권위주의 체제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20세기 후반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해진다. 1979년 10월에 박정희정권이 붕괴된 후, 군사 정권을 유지하려는 군부와 그것에 저항하는 시민 세력이 부딪친 것이다. 왜 그것이 특히 광주에서 크게 폭발했는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이 있지만, 아무튼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특전 부대의 과잉 진압과 시민의 저항, 시민 공동체의 형성, 계엄 군의 무력 진압으로 이어진 항쟁 기간 중,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여성들도 가두시위, 선전 활동, 헌혈 활동, 시위대 지원 활동 등, 이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피해도 또한 많았다. 사망, 부상, 구타당함 등의 피해에 더해, 성폭행의 피해와 그로인한 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하다. 한 예로, 당시 K여고 1학년 학생이었던 Y 양은 5월 19일 5명의 계엄군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이후 극심한 불안과 공포로 기이한 행동을 나타내게 되었고 증상이 악화되어 81년 초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요양원과 정신병원을 전전하다가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러한 예는 매우 많아 광주 항쟁을 주제로 한 '꽃잎'이라는 영화도 이 집단적 광란 속에서 정신착란증을 보인 후 떠돌다가 성폭행 당하고 행방을 감춘다는 줄거리를 전개하고 있다.

여성의 피해는 항쟁이 끝난 후의 보상 과정의 차별성, 가족 내 이중적 부담, 가부장제의 억압하에서의 정신적 부담 등, 그 후유증도 심하다. 앞의 4.3 항쟁과는 달리 광주 항쟁은 비교적 빨리 진상 규명, 피해 보상 및 명예회복 운동이 발전되었고 사회적 관심도 받았다. 그러나 그 과정 역시 남성 중심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취해진 의료 보호조치는 남성 세대주를 기초로 하였으며, 여성이 직접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상자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 한 예로 K씨(여)는 부상당한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딸이 화장실에 빠져 죽었고 그 충격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으며, Y씨(여)는 역시 부상당한 어머니의 수발로 소아마비 아들에 대한

보살핌이 소홀해져 증상이 악화되었다.

IV. 미군에 의한 성폭력

1945년 해방후 진주한 미군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남아 있다. 그에 관한 정치적인 논의는 여기서 생략하기로 한다. 앞서 4.3 항쟁에서도 본대로 미군은 사실상 한국의 주요 정책의 배후 주도를 해 왔으며, 군대의 통수권을 가지는 막강한 힘의 실체이다. 이 미군이 한국에서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여성 피해의 면을 보면 이는 매우 심각하다. 매춘업이 불법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군 부대 주변의 매춘 업소에 많은 여성이 흡수되어 이를 둘러싸고 경찰과 매춘 업자, 소위 '양공주'라고 하는 윤락여성 그리고 미군간에 겹겹이 제도화된 매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여성에 대한 각양의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두레방'이라고 하는 여성 시민단체가 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기도 하다.

강간, 구타, 살해 등의 범죄가 미군에 의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맺은 '한미 행정협정'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 미국인 군인에 대하여 한국에서 제대로 처벌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자 처벌은 물론 피해 배상도 받아야 하고, 그것이 미군 범죄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불평등조약인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1995년 11월30일부터 1996년 9월10일까지 7차에 걸친 개정 협상을 가졌으나, 1997년 5월 27일 미국 측이 일반 통보를 함으로서 협상은 사실상 중단이 되었다. 1992년 10월 윤금씨 살해사건²⁾, 1993년 김국혜씨 성폭행사건, 1994년 윤현아씨 성폭행사건, 미군남편에 의한 김분임씨와 두 자녀 살해사건, 1996년 6월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 성추행사건 등등, 미군에 의한 범죄는 추악함의 정도를 지나친 것이어서 한국사회의 반미 감정을 자극하고 있으며, 시민 단체로서 '주한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 본부'가 만들어져 [주한 미군 범죄 백서]를 발간하고, [미군 범죄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다음은 1987년 11월부터 1997년 7월 10년간 주요 신문과 미군 범죄 신고 센터에 접수된 미군 범죄만도 다음과 같다. 남성에 대한 폭행 51, 살인 8, 차 사고, 뺑소니 등 14, 시비, 절도 마약 등 11, 여성 폭행 6, 살인 3, 강간 및 강간 미수 6, 성희롱이다. 이보다 훨씬 많은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물론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도 대개가 미해결이거나 불구속 송치 또는 미현병대에 넘겨짐으로 끝났고 아주 적은 수만이 배상을 받거나 수감되었다.

2) 머리를 콜라 병으로 찢리고 자궁에 콜라 병이 박히고 항문에는 우산대가 꽂힌 채 살해되었다.

V.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위 문제들보다 오래 되었지만 가장 극심한 피해를 남겼으며, 이제야 피해의 사실이 공개되어 피해자들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진상 규명을 비롯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피해가 극심하다고 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에서이다. 첫째, 피해의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4.3의 피해자가 3만 명이려면 15년전쟁에서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입힌 피해는 수백만이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 피해자 수만 적게 잡아 8만이라고 벌 수 있으니 그 규모는 엄청난 것이었다. 둘째, 일회적인 무규칙적 강간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강간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0년이 넘게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UN인권 소위의 맥두갈 보고서에는 군위안소를 rape center라고 명기했다. 셋째, 일본정부가 정책으로서 기획한 것이었으므로 강제성을 행사하기 쉬웠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던 것이다. 넷째, 앞의 모든 점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연행으로부터 위안 소에서의 상황 전체가 강제에 의한 것으로 엄격한 통제와 감시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전쟁이 끝난 후 위안 소에 버려져 스스로 귀향했는지 현지에 남게 되었다. 현지에 남은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고, 귀향 후의 삶도 대부분 가족에게서도 버림받고, 오랜 성폭행으로 임신도 하지 못한 채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피해의 사실이 낙인이 되어, 또는 낙인이 될까 봐 지금까지 침묵한 것이다. 전쟁 후에 쓰여진 글에는 위안 소에서의 폭행에 못지 않은 것이었다.

이들에게 인간으로서 명예회복을 해주는 일은 한시도 늦어져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국민 기금'이라는 위로금으로 피해자들의 인간성을 피폐시키고 있다. 또한 번의 명예 훼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에는 '자유주의 사관'이니 하는 군위안부문제를 합리화하는 일종의 국민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피해자는 이러한 와중에 심히 휘청거리고 있다.

한국의 정대협 등 시민단체들은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활동을 하는 한편 타 아시아 피해국 단체들과 문제를 공유하고, 일본과 서구의 인권 단체들과 연대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VI. 여성 평화 운동

한국에서 위 여러 문제에 대해서 대책본부나 협의회 형식의 운동단체가 만들어져 문제의 해결과 미래의 근절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운동들은 한국정부에도 영향을 주어 다소간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국제 연대를 구축하여 세계사회의 다른 문제들과의 공통 기반도 찾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평화 운동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여성 운동 내에서 싹트고 있다. 위에서 본대로 전쟁과 가부장제는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쟁에 반대하거나 전쟁을 예방하는 평화 운동에 가부장제의 회

생자이면서 전쟁의 보다 심각한 희생자인 여성이 보다 적극적이었다는 것이 세계의 일반적인 논의이다. 환경 운동에서 볼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평화 운동에서도 여성 활동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의 가능성은 매우 적극적으로 평가되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새로 만들어진 '평화를 만드는 여성'이나 '여연'등의 주요 여성 단체에서도 북한 문제, 동티모르 사건, 유고 사건 등에 관심을 가지고 평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의 여성 운동 단체들은 UN등의 국제 기구를 통해 만나 연대하고, 국제 형사 재판소 설립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제 위의 구체적인 운동이나 보다 폭넓은 평화 운동이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국제 연대의 가능성을 크게 펼쳐 가며, 세계에서 패권주의의 극복과 세계 시민사회 형성 가능성을 열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황보고 2]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각국의 의회·정부의 활동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대만 정부의 활동

씨에 치타(Hsieh, Chi-Ta / 대만 국회의원)

발표내용

1. 인간적인 사회에서의 여성의 인권 보호의 의미
2. 최근의 몇 가지 중요한 사건에 대한 반성
3. 2차 대전의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4. 국제적인 여성 인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
5. 이번 회의에 거는 기대

Q 전범을 ^크원할지, 대만이 일본에 요구하는 것.
A. 罪도 有. 罪법된다면 전범이 입국해서 죄상에 대해 고백하는 일까지 막는 일이 되어서 罪도 有.

민간의 지원이 정부 지원보다 크다.
일본에 범죄자 처벌, 배상, 사과 요구 (사법화 추진)
민간은 일본에 직접 가서 항의 계획. 민간이 기금 그대 액수 모으려
정부가 이에 힘입어 적극적 방향 전환
여론에 달려
→ 민간 자원액과 등등금액 지원
위안부 지원, 피해자에게

Q 여성 폭력 발생이유
A. 여성 - 사랑의 표시
남성 - 욕망의 표출

남성을 전쟁으로 인해 인성 상실, 뉘름을 지극 → 성폭력
남성 대학살, 종군 위안부 강제 유발

2차대전 한국 중구 피해자.
8년전쟁 다 수천만 여성 학살 → 현재까지 큰 걸음 다가감.
과거 진영을 그대로 직시하지 않으면 과거의 잘못을 또 되풀이할 위험이 크다. → 일본 기록 X. 위험.
여성들은 또 다시 이러한 비극을 겪을 우려가 있다. 두려운 일이다.

경력

여성과 어린이의 사안, 사회복지 법정 제도 개선에 관심
Hsinchu 지방법원, Hualien 대법원 재판관 역임

[현황보고 2]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각국의 의회·정부의 활동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국회의 활동

요리코 마도카(Yoriko Madoka/일본 참의원, 현대가족문제연구소 소장)

1. 자신과 일본에서의 여성 문제에 대한 활동 소개

2. 일본 국내외의 최근 상황에 대한 보고

a) 일본 내에서의 재판

- * 전후 보상 문제에 대한 40 경우 중 5 경우
- *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의 간부 재판에 대한 첫 번째 판결
- * 일본 변호사 연합회의 권고안

b) UN 인권위원회

- *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갈의 보고서와 권고안

c) 아시아 여성 평화기금

d) 일본 국회

- * 의회
- * 참의원

Q. 아시아 여성기금 수령자 명단을 알수있는가
 A. 동의한다. 일본에 돌아가면 조사에 임하겠다.
 Q. 의원들은 그다지 정직하지 않다. 신빙성이 없다.
 A. 동의한다. 일본에 돌아가면 조사에 임하겠다.
 기금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난을
 받는 쪽이 있다.

3. 이 문제를 우리가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이유

- * 일본 정부의 정책
- * 여성평화기금
- *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

4. 주제와 전망

- * 인간 존엄성에 대한 범죄로서의 인식
- * 연료한 희생자들을 위한 조기 해결
- * 법정의 평결과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과 국제 노동기구의 전문가위원회의 권고안을 준
 중한 일본 국회에서의 입법활동 장려 및 촉진

Q. 위안부증 일본여성에게 어떠한 상처와 트라우마의 모습이 있는가
 A. 지금까지 조사된 것 없다. 일본 여성의 신장자나 연락자가 없었다.
 지금 고인이 된 한 학자는 미군이 점령군으로 왔을때 일본 정부가 미군위안소를 세운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서나 체계적인 연구는 없다.
 Q. 일본정부가 사과하지 않는 것은 천황의 신성을 영여해서인가
 A. 만약 일본정부가 공식사과한다면 천황의 신성을 공식사과한다고 볼수있어 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번) A. 제가 보기에 배상이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7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때문에 사죄는 없으리나 본다.

- * 일본정부의 아시아 여성 평화기금을 포함한 결단
- * 새 세대를 위한 교육

5. 결론

- * 21세기 전에 과거에 대한 해결, 혹은 극복
- * 희생자들과의 화해에 대한 진지한 접근
- * 현재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같은 문제

Q. 일본이 천황의 천위가 아닌 권력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야 사라진 의사가 있는것.
 천황은 이미 상징적 존재가 아닌가. 이유가 만원
 A. 일본 위력의 영향력은 보기보다 크지 않다. 국민은 권력주의를 원하
 지 않는다. 질문은 개방적이다.
 사실 많은 자료가 파괴되고 소실되었을 것이다 (일본보육자
 로) 그러나 희생 생존자 만으로도 충분한지 모른다. 무익 의견들만
 증거가 없다는 극강한다. 신사참배는 일본 역사를 숨겨려 만든것이
 숨어있다. 그러나 일본은 극도로 이런 사냥들에게 이런 짓을
 하는게 많다.

Q. 시모노 재판 인권침해
 A. 4/29 판례. 민중당 만들어짐. → 신당 내에서 조차도 이문제에 대해 관심은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전체적 분위기는 그다지 강하지 않다. (몇몇은 증요성을 인정했지만)
 그래서 아직도 그문제에 대해선 의회 2층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외부에서 고소가 들어오고 있어서 진상파워를 만들어 빨리 해결하러
 하지만 실제 법이 만들어 질때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흐른다.
 외국 세력 (민간 단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Q. 아시아 여성 기금 수혜자 숫자 A: 한국. 대만. 필리핀에서 85명이 받았다고
 보고 받았지만 확실치 않다.

경력 Q. 아시아 여성 기금 수혜자 숫자 A: 한국. 대만. 필리핀에서 85명이 받았다고
 재선의원, 현재 민주당
 현대 가족문제 연구소 소장
 "행복한 이혼을 위한 세미나", "이혼의 전화", "이혼한 여성의 모임, 손에 손잡고"의 대표
 시사해설자
 저서(30권 이상 저술, '주부 신드롬', '아내의 조용한 반항', '이혼을 선택한 여자들', '전환점', '재혼의
 시대')

Q. 국회의원. 양심있는 자들이 돕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는가.
 아무런 진전도 없다.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A. 국내 법제의 법률 만드는 데도 (0.20년째 걸리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좌절감을 이해한다. 이법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아니다.
 일본 학생들은 현대사를 배우지 않는다. 그들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이 느껴지는 것이다.
 심지어 알지 못하기도 하다. 남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일본사회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실제로 131 최대 인체실험 사례에 대해 그자 세계대전이후 참가자들은 크게 성공했다.
 전쟁법, 이문제를 제대로 처리 못한셈.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일본국민은 1. 역사를 배우야 한다 → 진실을 알고 일본사회가 변해야 한다.
 2. 개인적 책임과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문제해결에 대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무나 할말이 없다.

[현황보고 2]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각국의 의회·정부의 활동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활동

천정배(국회의원, 국회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 회원)

존경하는 각국의 국회의원 및 인권운동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집권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천정배입니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일본군이 최대 2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여성을 강제동원 혹은 납치하여 자신들의 성노예로 삼았던 사상 유례없는 비인도적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가해자인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일본과 피해국 국민들간의 우호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일본정부의 배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러한 원칙 하에 96년부터 본격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지난 96년 6월에 여성의원 9명이 일본군 위안부 이 문제를 최초로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여성의원들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일본정부에게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철회하고 배상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이에 전체 의원의 90%가 넘는 270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의원들은 서명 결과를 일본 총리와 의회에 전달하고, 대표자가 일본 중의원 의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 서명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93년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일시금과 매월 25만원씩의 생계비,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등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매월 25만원의 생계비로는 어려움이 많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증액해달라'는 청원을 국회에 제기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들의 뜻을 받들어 생활안정지원금을 월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위기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된 여성들의 아픔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국민 기금'에 유혹되지 않고 법적 해결을 촉구해 온 피해자들의 숭고한 의지를 존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97.2.3~25에는 국회의원 3명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공동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정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일본 정부의 진상 조사와 국가배상 및 위로금 지급 철회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97년 초부터 공식적인 "연구모임"을 결성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연구모임" 준비 의원들은 5월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역사교과서의 문제점과 올바른 기술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현황을 점검하고, 위안부 관련 역사교육이 (1)진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2)위안부 사건이 전쟁 중의 국가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3)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고, (4)재발방지와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에 새롭게 발행되는 대한민국의 중·고교 역사 교과서에 위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7.6월에 일본 문부성이 98년 봄부터 사용하는 교과서를 개정하면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과 일본정부의 책임, 연행 규모 등을 삭제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온 국민의 對日本노를 촉발시켰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즉시 일본정부에게 교과서 개정을 포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차원의 피해자 배상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7월에 여야를 망라한 29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모임"을 정식으로 결성하였습니다.

"연구모임"은 첫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을 통한 일본 정부의 국제법적 책임을 확인 둘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입법부 차원의 제도적 방안 모색 셋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 모색 넷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을 비롯한 피해국 및 일본의 입장과 국제사회에서의 현안 파악 다섯째,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 연구 등을 당면 과제로 설정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구 모임"은 9.9에 대한민국 외무부 당국자를 초청하여 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본군 전범의 출입국 규제 방안 및 국회 결의안 채택 등에 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9.11에는 서울 대학교 법학 연구원의 객원연구원 도츠카 에쓰로우 변호사를 초청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 기구의 움직임과 일본 정부의 입장을 듣고 토론하였습니다.

"연구 모임"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97.10월 정기국회에서 출입국 관리법의 개정안 및 '일본

군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의 골자는 '1910.8.29부터 1945.8.15까지 일본 정부,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일제 36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학대했던 일본 전범의 대한민국 입국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 촉구 결의안은 96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권고한 권고문에 준하여 일본 정부로 하여금 '국민 기금'을 철회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 배상 등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인데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동결의안이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게 외교적으로 커다란 압력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활동 현황 보고를 마치고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 모임의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 연대를 보다 강화하여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형사 재판소가 창설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국제 형사 재판소가 상설 화될 경우 대량 학살 및 비인도적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 협약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셋째, 위안부를 포함한 일본군의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방안과 일본군 전범의 명단 확보 및 입국 금지의 실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일 역사 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정부에 대해서는 대만의 경우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일본 정부에게 배상을 받아 내는 정책을 결정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정식으로 배상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 정책이 실행될 경우 일본 정부는 더 이상 '국민 기금'을 강행 지급할 명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 및 아시아의 피해 국들과 연대를 강화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 공동 노력을 기대합니다.

【종합토론】 아시아에서의 전쟁과 성폭력문제 해결방안

아시아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국가(국회)의 역할

이미경(국회의원,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 대표)

1. 머리말

인권 문제, 특히 여성에 대한 인권 문제가 유엔을 중심으로 한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기 시작한지 50여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여성 인권은 여지없이 뒷받혀 왔고, 특히 아시아 각국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일본의 침략전쟁 아래서 수십만의 여성들이 성노예로 억압당했고, 이후 베트남 전쟁, 한국전쟁 그리고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에서의 내전 중에도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여지없이 자행되었다.

그러나 여성에게 자행된 성폭력 문제는 국내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지 못했고, 더구나 국가간의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도 발전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 묻혀 버리기 일수였다. 따라서 아시아야말로 가장 여성 인권이 낙후한 지역이 되었으며, 아시아 여성들은 인권의 사각 지대에 방치된 채, 성폭력의 희생자로 고통받고 있다.

아시아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아시아의 여성 인권 운동 단체들이다. 여성 단체들은 아시아만이 아니라 세계 여성들과 연대하여, 여성에게 자행되는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비해 아시아 각 국의 정부나 국회의 역할은 너무도 미미한 형편이다. 민간단체들이 상호 활발한 연대 활동이 있는데 비해, 국회의원간의 연대 활동이나 교류도 거의 없는 편이다. 이제는 민간단체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여성 인권 특히 무력 갈등 하에서 행해지는 반인도적인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2. 아시아에서 여성 인권 향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왜 그토록 중요한 문제를 50년도 훨씬 지난 이후에야 제기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곤 한다. 바로 이것이 아시아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그만큼 인권이 무시되어 왔으며, 새로운 인권침해가 계속해서 자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를 주목하고, 그러한 조건을 아시아 각 국가들, 그리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앞장서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아시아 각 국가의 민주화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연대한다. 2차 대전 이후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중들은 권위주의 정부, 군사 정부의 새로운 억압의 굴레에 처하게 되었다. 군사 정부는 기본적 자유를 억압했고, 이에 저항하는 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인권 탄압을 받게 되었다. 국가권력에 의해서 의문의 죽음, 실종, 고문, 강간 등이 저질러졌다. 국가 자신이 반인권적 범죄를 자행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아시아 인권 운동이 당면한 일차적 과제이다. 민주화가 상대적으로 성장한 국가들의 국회의원들 민간단체들은 아직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나라의 민중들 특히 여성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일본 정부와 국회는 아시아 침략 중에 일본이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에 대해 국제 관습법과 국제 규약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일본 정부나 국회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비롯한 과거 범죄 행위를 진지하고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초강대국이라는 국제사회의 힘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조기에 덮어버리려는데만 열중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과거 범죄 행위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국제 규약을 준수한다면, 아시아의 인권 상황은 급속히 신장될 것이며, 향후 일어나는 아시아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세계 각국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다행히 최근 일본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조사회설치법안"을 성사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환영한다.

셋째,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며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범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확산되는 것은 아시아에서 여성 지위가 낮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의 정조는 지나치게 강조함과 동시에 남성들에 의한 매춘과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중적 윤리관이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성폭력과 가정 폭력을 예방 처벌하기 위한 법제화가 이루어 졌다.

넷째, 무력 갈등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평화의 조건을 만드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아시아에서 무력 갈등의 소지는 냉전이 끝난 지금에도 여전히 상존 하고 있다. 아시아 각 국에는 대규모 군사기지와 미국 군대 군사기지가 있다. 군사기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강간과 매매춘을 위시한 성폭력 범죄 발생률이 훨씬 높다.

국회는 병사들에게 여성에 대한 폭력이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한국 국방부는 병영 내의 성희롱을 금지하는 교육 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교육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 각 국의 국회가 보다 용이 주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 형사법정의 설립을 환영하며, 이의 비준과 정당한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지난 7월

유엔은 국제형사법정의 설립을 의결하고, 각 국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지난 2차대전 이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을 위해 국제법의 논의를 발전시켜 온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실이다. 특히 국가간의 힘의 역학 관계 속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갖지 못했던 아시아 국가들의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여섯째, 국가 인권위원회와 같은 인권 기구를 상설화 하여, 인권 교육, 인권에 관한 법제화 등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활동을 촉구하고 지원한다. 특히 반인도적 범죄,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법과 국내법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3. 맺음말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여성 인권 특히 정치 외교적인 문제와 연관된 무력 갈등 아래서의 여성 폭력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 없다. 각 국 정부들은 이러한 문제로 이웃나라 특히 강대국과 더 이상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관련 피해국 정부들이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력갈등 아래서 여성 폭력 문제는 언제나 피해 당사자와 민간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강력한 가해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것이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차이이다.

이러한 힘겨운 싸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지루하게 오래 계속되고 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문제에 개입하려는 국회의원 수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의 개입은 보다 효과적으로 정부와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각 정당간에 차별성을 드러내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우리는 무력 갈등 하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는데 너무나 지루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아시아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가끔 이 문제를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과 현재의 사건들을 연관시키면서 연대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해결의 결과 못지 않게 그 과정이 인권 교육이 되며, 새로운 인권에 관한 법제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인권과 평화, 특히 여성 인권의 신장에 관심을 가진 아시아의 민간단체, 국회의원들 간의 상호 지원, 교류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보충발언】 아시아에서의 전쟁과 성폭력문제 해결방안

기본 인권과 도덕적 지도력

클레어 마린펠트(독일 에버트 재단) - 국방감독관

안보정책의 모습은 1990년대초부터 새로운 시대를 맞아 깊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독일에서의 지정학적 변화와 대변동은 현재까지 독일 군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체주의 이념에 따라 창설된 구 동독 군대의 해산, 50만명에서 최근 34만명으로 축소된 독일연방 군대, 새로운 서방군 사동맹 구조에서 통일독일의 새로운 역할, 그리고 유엔, 나토, 서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전개하는 평화구축 및 평화유지 작전에 참여할 책임 등은, 현재 새로운 천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독일 연방군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해당한다. 우리 군의 병사들은 지난 몇 년동안 직업 군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장래 설계에서도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그리고 병사들은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데 40년 이상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의회 기구, 즉 하원(분데스타) 국방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유럽 및 영미 헌법 모델에 기초한 독일연방공화국은 기본법(헌법)은 1949년 5월부터 발효되었다. 1945 독일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완전히 몰락한 이후, 독일이 다시 군대를 가질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실제로 헌법의 창시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군사력의 존재는 물론 군대의 창설에 관한 규정이 없는 헌법을 만들었다. 최종 헌법에 포함된 규정은 징집 거부권(기본법 4조 3항)과 군사침공 금지규정(26조)이었다.

역사의 교훈

동서갈등이 격화되자 미국과 영국은 서방의 평화를 지키는데 독일연방이 군사적 기여를 해야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구 적군이면서 현 방위동맹의 일원인 독일이 전후 10년이 지나자마자 재무장한다는 예상은 독일 안팎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독일 의회의 다수 의원들은 나찌 전체주의 체제 아래서 겪었던 고난을 잘 기억하고 있는 상태였다. 더구나 구 독일제국와 이른바 "제3제국"의 군사헌법이 모두 국가 수반으로 하여금 군 최고통수권자를 겸임하도록 했으며, 그래서 통치자가 어떠한 민주적인 통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므로 "국가안의 국가"를 만드는 것과 같은 권력의 남용은 전후 독일에서 재발해서는 안되었으며, 정치의 우월성이 영구적으로 보장되어야 했다. 육해공

1956년

군의 창설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계속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회에 국방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히 조사권을 부여하였다.(기본법 45조 가) 여기에 추가로 의회에서 국방감독관을 임명함으로써 군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되도록 결정되었다. 이 결정은 망명 시절 스웨덴의 군사 옴부즈만 제도를 파악할 수 있었던 사회민주당 의원 에른스크 폴의 제안에 기초한 것이었다.

1956년 3월 16일 군대에 관한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45조 나항이 기본법에 삽입되었다. 이 조항은 "군대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하원이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는 감독관을 임명한다. 세부 사항은 연방 헌법에서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 "하원 국방 감독관"법은 그 다음해 6월부터 권한을 갖는 이 의회 기구의 지위, 과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헬무트 폰 그롤만이 1959년 4월 첫 감독관으로 임명되었다. 나는 1995년 이 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취임 초기에는 여성에게 이러한 임무를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놀랍게 받아들였으나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군인의 도덕적 지도력’ 강조 - 사회적·시민적 역할 교육 → 사회적 군대리 통합.

법률적 기초

독일 헌법(45조 나)과 독일 하원 국방감독관은 "하원의 보조기관", 즉 입법부의 보조기관으로 기능한다. 이 점은 독일 의회(Parliament)와 국방위원회가 제한된 범위내 이지만 나에게 지시를 내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므로 국방위원회가 담당하기로 한 영역에서 내가 행동을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나는 내 활동을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권력 분리 원칙 때문에 나에게서 평화시기에 독일군 최고 지휘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명령을 내릴 권리가 없다. 그 역시 나에게 명령을 내릴 권리가 없다. 집행력과 관련해서 국방감독관에서 부여되지 않은 권한은 이 직책이 갖는 특수한 지위에서 보완된다. 국방감독관은 공법상 보장되는 직책이며 "다수 지지"의 원칙, 즉 하원 다수의 지지가 있으면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서 임명된다. 이처럼 신뢰도 기반이 넓은 지위이기 때문에 감독관의 목소리는 무게를 갖는다. 그러므로 국방감독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방법을 최대한 피하고 의회의 기반과 자신의 도덕적 영향력을 사용한다. 의회의 어떤 직책보다 장기간인 5년의 임기는 감독관의 의회내 다수진영의 변동과 상관없이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나는 직무수행상 고위 공무원(나의 법적 대리인이기도 하다)의 지원을 받으며 약 70명의 실무진과 함께 일한다.

법적 의무

하원 국방감독관법은 나의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군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거나 도덕적 지도력이 훼손되었다는 상황을 통보받으면 나는 행동을 취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두 가지 상

독일 [국방감독관
국방위원회]

황을 간단히 살펴보았으면 한다. 독일 연방 헌법은 전문에서 인간존엄성, 신체적 안녕을 유지할 권리, 인격의 자유로운 개발, 개인의 사적 영역을 국가 개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법앞의 평등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연방군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는다.

이에 대한 제약은 헌법 17조 기항에 따라 단지 관련법의 입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이 조항은 질서와 복종과 같은 군대의 필수적인 원칙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는 듯 보일 것이다. 그러나 군복무가 갖는 특수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만 기본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양자의 관계를 조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원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일이 내 업무의 절반을 차지한다.

업무의 다른 절반은 군대의 도덕적 지도력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덕적 지도력이라는 원칙은 법률로 규정된 것이 아니지만 내 견해로는 그렇다고 이 원칙의 의미가 작아지지는 않는다. 도덕적 지도력이 사회생활 속에서 긍정적 의미를 내기 위해서는 실제 경험으로 느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 개념은 역동적인 개념이다. 군의 관점에서 보면 도덕적 지도력은 독일연방군에서 복무하는 사람들간의 인간관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이다. 더 큰 맥락에서 보면 도덕적 지도력은 군대를 국가와 사회에 통합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1) 현대에 모든 지도력의 기본은 인간 존엄성이다. 독일 연방의 정치적 사회적 발전에 따라 성격이 규정되는 독일 연방군의 군사적 지도력의 내용과 그 형성 과정에 기초가 되는 것이 인간 존엄성이다. 이 개념을 정립한 그라프 폰 바우디신 장군은 도덕적 지도력의 목적이, "지휘체계, 훈련, 징계, 군대의 정치 교육, 정보 활동, 복지, 근무내외의 공동체 생활 상에서" 군인들이 독립적이며 책임 있는 개인으로서 존중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설명한다.

40년전에 이 개념은 단지 군 지휘관들의 칠판을 장식하는 말이었으나, 개혁 지향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그 이후 이 개념을 정교한 규범과 규율의 체계로 발전시켰다. 그에 따라 도덕적 지도력에 포함되는 규율에, 군인들의 군대 공동체내에서의 공동 생활, 징계 사항, 징계시 법적 보호사항, 군복무 형태에 대한 의견 개진권, 그리고 모든 군인이 국방 감독관인 나에서 청원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었다.

(2) 도덕적 지도력의 목적에는 군대와 군인이 국가와 사회 속에서 차지해야할 역할과 지위를 규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럼으로써 군대가 "국가안의 국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방법은 군인들에 대한 시민 교육 및 정치 교육, 군대와 사회간의 쌍방향 정보 교환, 사회 홍보 활동, 그리고 정치, 사회단체와의 연계 형성 등이다.

정치 활동

나의 의회 감독 활동은 정확하고 직접적이며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기초한다. 보통 내가 의존하는 정보의 원천은 두가지 인데 군인들의 청원 내용(1번 참조)과 군 현장방문 조사 결과(2번 참조)이다.

(1) 독일 하원 국방감독관법 7부는 "군대의 모든 구성원은 군대 공식 체계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국방감독관에게 직접적인 접근을 할 권리를 갖는다. 국방감독관에 대한 청원 행위는 군대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 행위자는 그외의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군인들은 누구나 문제가 생기면 공식 체계를 통하지 않고 나에게 연락할 권리를 갖는다. 나는 매년 6천건의 청원을 접수하는데 그 내용은 사실상 제한범위가 없다. 청원 사안을 보면, 상급자, 하급자와의 관계, 병영 공동체 생활, 개인적인 문제, 의무입대에 따른 문제, 연방군 의료부대의 복지 및 건강관리에 관한 문제 등 다양하다.

여러 사람의 연명으로 제출되는 집단 청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은 군인들이 개개인으로서 나에게 연락할 권리를 부여한다. 익명의 청원 또한 무시된다.

독일 국방감독관법 7부 2항은 이러한 법적 권리를 행사한 군인이 어떤 불이익도 받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규정이다. 그렇다고 이 조항으로 군인들이 백지 수표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청원 내용에는 상급자나 동료 군인들에 해가 되는 모욕적이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서는 안되며 사실 관계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 내용이 들어있어서도 안된다. 청원은 정화 효과를 갖는다. 청원자는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벗어던질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

청원 사항은 하나씩 세부적인 개별 검토를 거친다. 검토 절차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증인이나 전문가를 불러 직접 의견을 청취하고 독자적인 조사할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엄청난 청원 건수 때문에 나는 보통 청원자의 상급자나 해당 부대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청원 내용을 검토하며 어떤 경우에는 국방부로부터 정보 협조를 얻기도 한다. 나는 국방부 장관 및 모든 예하 부대 및 부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또 그들의 기록을 볼 권리를 갖고 있다. 청원자는 반드시 청원 검토 결과를 통보받는다.

(2) 법이 나에게 부여한 감독권은 효과적인 감독 수단을 갖추고 있다. 나는 국방 감독관으로서 언제든지 사전 통보 없이 독일 연방군의 모든 시설을 방문할 자격을 갖고 있다. 군 현장 방문은 주중 일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나는 규칙적으로 매주 이를 군인들을 직접 만난다. 그 장소는 병참, 훈련장, 작전현장 어디든지 될 수 있다. 이 방법은 그 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다. 불시에 방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인들은 "본으로부터의 행차"에 준비할 필요가 없고, 또 나로서는 그들이 아무런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군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장점이 있다. 군 현장 상황은 매일

매일의 군 생활을 그대로 보여준다. 불시 방문을 당했을 때 처음 얼마동안의 놀람이 사라지고 의구심을 띤 표정이 가라앉으면 군인들은 곧 쉽게 대화에 참여하고 마음에 있는 말을 전한다.

연례 보고서

나의 활동과 경험은 매년 연례보고서로 작성되어 법이 규정한 바대로 의회에 제출된다. 제출된 보고서는 하원 국방위원회와 전체 회의에서 심의된다. 국방부 장관은 보고서에 포함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입장이나 개선 조치를 발표한다.

국방 감독관의 연례 보고서가 상투적인 보고서로 취급되지 않는 것은 오래 전부터의 일이다. 반면,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매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 하는 것인데, 이 보고서는 독일군대 상황에 대한 분석자료도 아니다. 이 보고서는 군대의 결함에 대한 보고서일 뿐이다. 그러나 상당한 관심을 모으는 자료인 것은 사실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군대와 의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반향을 야기하기도 한다.

지난 해 두 차례 그랬듯이 나는 필요할 경우에 특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외국 언론에도 보도된 군부내 극우 극단주의자들의 사건과 같은 경우에 사건의 배경을 밝히는 조사가 필요했다. 그러나 독일에서 벌어졌던 큰 논쟁을 이 자리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독일과 독일 군대에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인상을 자아내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다. 이는 잘못 전달된 인상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 일부 예외가 있지만 -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의무감을 갖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유럽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패를 주는 일이 된다. 정치적 극단주의는 항상 민주 질서에 포함된 가치를 공격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한 극단주의가 독일사회에 발붙일 가능성은 없다. 동시에 의회와 연방정부는 극단주의가 독일군 내에 발붙일 수 없도록 보장할 것이다. 그리고 나도 국방 감독관으로서 극단주의자들을 봉쇄하는 일에 기여할 것이다.

* 이 원고는 독일 에베르트 재단이 종합토론과 관련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종합 토론] 아시아에서의 전쟁과 성폭력문제 해결방안

여성인권을 위한 NGO의 역할

신혜수(한국 여성의전화 연합 회장)

Q. 위안부 문제 (매독진 보고서)
A. '65 일본: 한국 협약 - 한일조약
· 재산권 침략체본) => 인권에 대한 언급 없음.
· 경제협력
→ 일본이 책임을 져야한다.
- 국제형사 재판소에 의뢰
- 전문가 의견) => 법적 문제 제기
- UN에서 제기

Q. 광주사태 [800 소음 300여명 보상]
- 강간당한 여학생 보상 : 강간보다 정신병으로 사망한 부분에만 미비한 보상
→ 강간당한 여성의 문제는 무시되고 제3의 고통을 받고 있다.

Q. 신학적 문제속의 여성 인권 문제 - '선학과의 대안 순종'
전략적 측면속의 기독교적인 문제 제기 필요.

[종합 토론회] 아시아에서의 전쟁과 성폭력문제 해결방안

여성의 인권에 관련된 정보 통신과 교육의 역할

루즈 마티네즈(Luz Martinez/필리핀, Isis International 마닐라 연구지원 매니저)

미디어는 급세기 인기 있는 교육의 가장 유력한 형태 중에 하나이다. 긍정적이거나 때론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온 도구이다. 라디오, 프린트, 텔레비전, 케이블과 영화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 아이디어, 이미지, 그리고 비전을 만들어 내는 미디어다. 그런 이유로 Isis International-Manila는 여성 인권 주의자들의 정보 통신 기구로서 어떻게 미디어들이 국제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공헌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지 절박한 관심을 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켜봐왔다.

Isis는 여성과 미디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를 해 왔으며 여성과 미디어에 대한 회의를 1980년 이후 개최해 왔다. 1996년 Women's Experiences in Media(미디어에 있어서 여성들의 경험)란 책과 State of Women and Media(여성 지위와 미디어)란 책을 출판하였으며, 올해에는 Media Focus on Violence Against Women Preliminary Report(여성에 대한 폭력에 중점을 둔 미디어)라는 책을 캄보디아, 중국, 피지,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남한과 태국의 여성들에 가해지는 폭력을 연구하는 것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었다:

1. 세계 많은 여성들에게 미디어의 역할은 여성의 문제를 다루면서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여성 폭력 같은 것들을 주요 관심사 거리로 두는 것이었다.
2. 나라의 경제와 여성에 대한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예를 들면 일본, 캄보디아, 그리고 타일랜드는 포르노 문화에 병들어 있고, 미디어 역시 여성 문제를 형편없게 다루고 있는 반면 중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 아주 잘 다루고 있다.
3. 여성들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정보를 주로 얻는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텔레비전은 가장 강력한 매개체가 된다. 전 인구의 30퍼센트 이상이 텔레비전을 한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거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파악되며, 한편 필리핀과 태평양지역에서 여자들은 주로 라디오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
4. 나라마다 방송 통신강좌를 듣는 젊은 여성들이 점차로 늘어가는 추세이다. 하나의 직업으로 배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운영 면에서 실권의 밖에 머문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리 천장" 현상은 아시아 지역의 미디어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강하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미

디어와 광고에 많은 여성들이 일하지만 미디어에서 여성들의 모습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미디어에서 여성들의 수와 여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있어서의 발전 사이의 자동적인 연관성이 없다.

5. 여성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것에 관심을 두며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모니터링해온 여성들이 사는 나라에서 가장 효과적인 변화가 미디어에서 일어난다.

6. 그들의 사회에서 여성들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효과적으로 미디어를 주요원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용할 수 있다.

누가 미디어를 조절하는가?

물론 남자가 한다. 그것은 미디어가 전반적으로 족장제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들이 종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민영방송이든 국가방송이든간에 정보전달상 계급 사회의 인습대로 여성을 위하거나 여성에 의해 만들어진 방송은 하찮게 취급되어진다.

조사된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주로 강간이나 치정에 얽힌 살인 그리고 엽기적인 살인 등으로 나타난다. 대부분 엽기성은 진행상의 기준이 된다.

텔레비전, 라디오 그리고 프린트 미디어의 여성 문제와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요리 미용, 육아 그리고 집안 관리 같은 전통적인 정보를 전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조절하는 사람에 따라 미디어는 소유자의 의사일정을 관철시키는데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같이 정부에 의해 소유된 경우라면 시청자들은 부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지배된다. 민영방송이라면 일본이나 한국 그리고 필리핀 태국같이 상업성만을 추구하여 만들어지게 된다. 광고업자들도 소유권에 관계없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인권 침해자로서 미디어

사회에 미디어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보스니아나 르완다에서 입증된 것처럼 극심한 파괴력을 발휘하게 된다.

검열 반대의 NGO의 제 19 조항에 의한 세밀한 연구에 의해 세르비아 정부군은 미디어를 이용해서 크로와츠와 무슬렘에 대한 증오감을 부추겼다고 조사되었다. 뉴욕의 최근 포럼에서 세르비아에 대한 공격을 채찍질하기 위해 보스니아 여자들을 강간한 사건을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었는지 보스니아 여성 인권 주의 기자가 발표한 바 있다. 보스니아측 로고는 '보스니아 여인을 강간한 것은 전 민족을 강간한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포커스는 당한 여자들을 지원하거나 보호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여자들에게 가해진 잔혹성도 아니었다. 단지 전쟁을 계속해내기 위한 명목으로 이용된 것이었다.

르완다에서는 라디오가 투치족을 대학살한 후투스족을 옹호하는 주요 매개체로 사용되었다. 민영화된 라디오 방송국이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다른 종족에 대한 미움을 조장하는데 이용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인간 감정을 조정하고 민족 중심 주의를 일으키는 극단적인 예가 된다. 포르노 문화도 여성 인권 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을 피해주는 것이 '정상'으로 보이게끔 여성을 격하시키는 것으로 공공연한 조작의 범주로 들어갈 수 있다.

좀더 덜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여자들이 남성들에 비해 똑똑하지 못하며, 부주의하고 허영 되고 단지 성의 도구이며, 밥하고 가족 돌보는데 만 기쁨을 느끼는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여자들은 똑똑하지 않으며, 남자들이 주로 선택하며, 어머니나 아내들은 목적은 재생산과 사회적인 재생산 같은 잡다한 일을 꾸려 나가는 것이다. 실제로 미디어는 여성들에게 선택권 같지도 않은, 정해진 선택권을 부여하며, 더욱 심한 것은 여성들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존재마저 규정지으려 하는 것이다.

미묘한 형태로 이런 것들은 여성들의 역할을 2류계급의 시민과 남성과는 동등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여성들을 나약하게 만들어서 폭력에 더욱 지배되게 한다. 여성들의 문제가 중요하게 주어지지 않고, 여성에게 일어난 것들은 사소하거나 옛보는 정도의 행위로만 치부될 때, 이런 것들이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ISIS측의 주장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행위상의 국제법이 있어야 한다. 정부와 여성들간의 매개체로서 미디어가 존재하는 경우, 여성들의 권리가 미디어 상으로 얼마나 보호받으며 여성들의 문제를 제대로 나타내어 대변하며 반영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미디어가 여성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 있나

사회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무척 복잡하다.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파괴적이지도 않다. 인내심과 평화를 도모하기도 한다. 세계적인 규모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며, 공무원과 사업자들이 사람들에게 제역할을 하게끔 도와주며, 정부와 국민들간의 거리감을 줄여서 정보를 전달하게 한다. 강력한 교육의 도구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만들어 내기도 한다.

사회적인 운동은 지난 수십 년간 미디어를 이용하여 중요한 성공을 거뒀다 사회 환경과 전세계적인 국민운동들은 미디어를 적절하게 이용한 경우이며 이런 통신 매개체가 아니었다면 이루지 못했을 문제들을 의식하게끔 하였다. 정부 차원이나 민간 차원의 운동은 상황적인 악폐를 사회로 하여금 참지 못하게 만드는 기후를 조성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미디어에 미치는 상승 영향력은 여성이다. 가장 최근 예로서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중국 여성

강간 사건이다. 주요 미디어들은 최초로 인도네시아의 반동과 폭력을 다룰 때 전반적으로 걸쳐 발생하는 중국인과 인도네시아인들 사이의 강간이나, 살인 사건 그리고 탄압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 잔혹성은 여성 인권 주의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역에 소식을 전파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잠깐 사이에 주요 미디어와 국제 전파 망은 강간 소식을 전달했다. 그리하여 전 세계적인 데모가 일어났으며 여성 단체와 인권 주의자들과 중국 여러 단체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Habibie 에게 진상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희생자에게 보상을 하며,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반 중국에 대한 태도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오래 묵은 정치적 문화적인 탄압을 이런 인권 단체가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밝혀 내기 시작하였다.

사회 전반적인 의식의 흐름을 좀더 강하게 추진시킨 운동은 정신대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인권 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위안부라는 단어를 이해한 것은 소수에 불과했다. 오늘날에는 '위안부'라는 말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사회적 의식 속으로 전달되어서 젊은 인권 주의자들에게 미래에는 여성들에 대한 착취가 발생하지 않게끔 고무시키게 되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일단 여성들이 교육의 도구로 미디어를 이용한다면 그 영향력은 광범위해지며 효과가 아주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주요 미디어의 도움으로 가정 내의 폭력 문제를 의식적으로 높게 부각시키게 되었다. 우루구아이의 여성 인권 주의자들에 따르면, 이런 여성 문제만이 그렇게 의식되기 시작한 것이고 주요 미디어에 연계된 것이 무척 가치 있는 일이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여자들만의 방송망은 법적 이혼을 하지 않은 여자들의 아이가 사생아라고 불리던 오랜 법을 고치게끔 하였다. 여자들이 이혼한 후에도 전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재혼이 가능했지만 남편들은 전처를 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춘녀로 만든 상태로 자신들은 얼마든지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 미디어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여자들은 남자들이 새 가정을 이루면서 전처에게 법적인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를 보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여성 방송은 미디어를 통해 더욱 놀라운 이야기들을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전달하였다.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던 법을 다시 고쳐 만들게 요구한 것이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이혼하게 되었지만 전남편이 이혼을 하려 하지 않을 때 법정에 법적인 판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필리핀의 여성 단체인 Sabol은 연합하여 강간당한 문제를 단순한 동정의 단계가 아닌 인권에 대한 범죄로 보는 강간 방지 법안을 통과하게끔 실력을 행사하였다.

미디어는 여성들의 문제에 대한 침묵을 깨는데 수단이 되어 왔다. 나이 드신 나의 숙모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내가 젊었을 때보다 세상이 더 나빠졌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여성들에게 행해진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여성들은 더이상 가만히 있지는 않는

다. 젊은 세대들이 여성에 대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 하고 남자들이 그런 범죄 자체를 없애려 하니 세상이 더 좋아진 것이다."

미디어를 조정하는 여성들

여성들이 미디어에 관련되어 있고 또 정보의 모든 출처와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 ISIS는 미디어가 강력한 동맹 관계라고 본다.

(여성 단체)

뉴욕의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Meeting 을 위해서 비디오 테이프와 함께 긍정적인 여성 광고를 보인바 있다. 이런 광고는 중국, 캐나다, 미국, 일본 그리고 필리핀의 여성 단체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긍정적인 위치로 여성들을 다룬 것이다. 우리는 광고업자들이 여성들을 착취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고 물건을 파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주고 싶었다.

또한 여러 차례의 포럼을 통해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미국 그리고 필리핀의 문학 단체 혹은 미디어를 모니터링해온 여성들이 미디어를 그들이 변화시킨 방향을 알게 되었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모니터링하고 믿음직하게 만든 나라에서는 앞으로의 착취를 방지하고 성공적인 변화를 가지게 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Kalayanamitra라는 여성단체들이 강간당한 것이 치마 길이와 관련되었다는 광고를 삭제하는데 성공했다.

말레시아에서는 여성 언론인들이 성차별적인 내용이 담긴 자동차 광고 문안을 삭제하는데 성공했다. 캄보디아에서도 신문의 포르노 같은 내용에 대해 미디어 소유주들과 공개 토론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여성 언론인들이 사람들이 모두 광고에 대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었다.

우리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미디어 모니터링하는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 이런 네트워크는 경험과 사상, 사물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미디어와 정부 그리고 민간단체간의 대화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우리는 척도를 만들어 여성들의 진보 상황 VIS a Vis 여성에 대한 묘사와 미디어에서의 VAW 보고서를 측정할 수 있어야한다.

인터넷 네트워크 AWORC 아시아 여성 정보 교환같은 것을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서로 퍼트리고 다른 지역과의 서로 연결이 되게 한다. 그 그룹은 인터넷을 위한 여성 연구를 하는 과정을 하고 있다.

라디오 연구 프로젝트를 새로 발견해서 ISIS는 라디오 전파 네트워크를 이용해 낮은 기술과 높은 기술을 연결할 것이다. 여성 방송인들을 좀더 여성 인권에 대한 정보와 인터넷 자료와 쉽게 접근하게 만들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성 라디오 프로그램에 방송 포맷을 이용해서 쉽게 정보를

퍼뜨리게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미디어와 여성의 상황의 2부를 실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은 나라가 여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여성 폭력에 대한 포커스'란 보고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 ISIS International은 여성들의 긍정적인 도구로 모든 형태의 미디어를 만들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사회에서 미디어가 여성들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표할 수 있고 여성들 권리를 증진하는데 여성들 편이 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라고 우리는 믿는다. 이런 파트너십은 대체로 미디어와 사회 안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불가피하게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 것이다.

경력

- 1998.7(현재) 필리핀 마닐라의 Isis International 연구역이자 자문 매니저
- 1993.2-1998.6 Isis International Manila 에서 communication officer
- 1992.2-1988.12 일리노이즈 시카고의 Management Cornerstone 에서 상담역이자, Voice of People의 이사역
- 1982.12. 일리노이즈 시카고 정신의학 진료소 인턴과정

Human Rights Commission Commemo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omen's Human Rights in Asia's
Violence against Women in Armed Conflict

English

SEPTEMBER 15 - 17, 1995

NATIONAL ASSEMBLY MEMORIAL BUILDING, SEOUL, KOREA

Purpose of the Event: Forum

Women's human rights, especially women's rights, are widely and adversely violated, including in various positions, rape, and other forms of gender violence are grueling, and the deaths of violence against women during armed conflict have increased.

Such violations of women's human rights in Asia are linked to the deep-seated patriarchy and the lack of democracy in Asia. In particular, Japan still has not acknowledged her war crimes and acts of gender harassment, such as military sexual slavery, experiments on live human beings and comfort women during the war. The fact that Japan still exercises strong power in Asia without full disclosure of her war crimes and official apology has added to the backwardness of human rights in Asia.

Therefore,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and peace cannot be solved within a narrow national framework. Rather, they can be solved only if all states join forces to fulfill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e struggles of various of human rights activists and NGOs working with them are more effective if they cooperate with their governments and legislatures.

It is meaningful, therefore, that members of national legislatures as well as NGOs are joining hands to cooperate on human rights. We hope to seek concrete ways to act for the rights of women in the international arena and to continue this effort in the future.

(International Symposium Commemo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omen's Human Rights in Asia : Violence against Women in Armed Conflict

◎ SEPTEMBER 16 - 17, 1998

◎ NATIONAL ASSEMBLY MEMORIAL BUILDING SEOUL, KOREA

1. Purpose of the Symposium

Human rights in Asia, especially women's rights, are routinely and severely violated. Trafficking in women, prostitution, rape, and other forms of gender violence are growing, and the details of violence against women during wars have yet to be revealed.

Such violations of women's human rights in Asia are linked to the deeply-rooted patriarchy and the backwardness of democracy in Asia. In particular, Japan still has not acknowledged her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such as military sexual slavery, experiments on live human beings and forcible labor drafting. The fact that Japan still exercises strong power in Asia without full disclosure of its war crimes and official accountability attests to the backwardness of human rights in Asia.

Nowadays,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and peace cannot be solved within a single nation's boundaries. Rather, they can be solved only if all sides join forces to follow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e struggles of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NGOs working with them are more effective if they can cooperate with their governments and legislatures.

It is meaningful, therefore, that members of national legislatures as well as NGOs are jointly holding a symposium on human rights. We hope to seek concrete ways to act for the MPs and NGOs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and to continue this effort in the future.

2. Co-Organizers :

- Associa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Studying the 'Comfort Women' Issue
- Korea Women's Hot Line
-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 Friedrich-Ebert-Stiftung
-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3. Overseas Participants:

- Two national legislators from the Taiwan, and Japan.
- Four civil activists from Sri Lanka, Thailand, Indonesia, and the Philippine

4. Program

SEPT. 15: PARTICIPANTS FROM ABROAD ARRIVE.

19:00 Dinner with organizers(At Korean Restaurant in Hotel Holiday Inn Seoul)

Moderator : Shin Heisoo

Introduction about participations, discussion about resolution, information about symposium,

SEPT. 16: INTERNATIONAL SYMPOSIUM

Moderator: Kim Yoon-Ok(Co-representativ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09:00 - 10:00 Registration

10:00 - 10:45 Opening Ceremony

Opening Address: Lee Mi-kyung(MP, Chairperson, Associa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Studying the 'Comfort Women' Issue)

Welcoming speech: Park Jyun-Kyu(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Cheon(Minister of Justice)

Yoon Hoo-Jung(Chairperson, Presidential Commission on Women's Affairs)

Opening Address : Shin Hei-Soo(Chairperson, Korea Women's Hot Line)

Yun Chung-Ok(Co-representativ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Peter Mayer(Head, Seoul Office of Friderich-Ebert-Stiftung)

Introduction of participants from overseas and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women's NGOs

10:45-11:00 Tea Break

11:00-11:40 Keynote Speech : "Women's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

Theo Van Boven(Professor, University of Masstricht and member of the UN Committee on Racial Discrimination)

11:40-12:00 Q & A

12:00-13:30 Lunch and movie about 'comfort woman'

13:30-14:30 Report I: Report on women's human rights during war in Asia: NGO representatives from each region:

Moderator: Lee Sung-yol(Chairperson,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in Korea Women's Hot Line)

1. Nimalka Fernando(International Movement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Racism) : Sri Lanka(also covering India, Bangladesh, Pakistan)

2. Virada Somswasdi(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 Thailand(also covering Burma, Cambodia, Vietnam)

3. Ita Fatia Nadia(Kalyanamitra) : Indonesia (also covering East Timor)

4. Chung Jin-Sung(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Executive Committe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Korea (also covering the situ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14:30-15:00 Q & A and Discussion

15:00-15:15 Tea Break

15:15-16:45 Report II: Report on a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other governments on the

'Comfort Women' Issue:

Moderator: Oh Yang-Soon(MP, Member of Associa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Studying the 'Comfort Women' Issue)

1. Yoriko Madoka(Japan. MP)

2. Hsieh Chi-Ta(Taiwan. MP)

3. Chun Jung-Bae(South Korea, Member of Associa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Studying the 'Comfort Women' Issue)

16:45-17:30 Q & A and Discussion:

19:00-21:00 Reception(Hosted by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SEPT. 17: INTERNATIONAL SYMPOSIUM

09:00 - 09:30 Registration

09:30 - 11:00 Plenary

Moderator : Chi Eun-Hee(Executive Committee of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Co-representative,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

09:30 - 10:30 Presentation

- "Role of Parliaments in Women's Human Rights":

Lee Mi-kyung(MP, Chairperson of Associa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Studying
the 'Comfort Women' Issue)

- "Supplementary Statement: Fundamental Rights and Moral Leadership" : Claire Marienfeld

- "Role of NGOs in Women's Human Rights": Shin Hei-soo(President, Korea Women's Hot Line)

- "Role of Education and Media in Women's Human Rights":

Luz Martinez(Research and Advocacy manager, Isis International Manila)

- "Rol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Women's Human Rights":

Theo Van Boven(Professor, University of Maastricht and member of the UN Committee on

Racial Discrimination

10:30-11:00 Discussion

11:00-11:15 Tea Break

11:15-12:30 Presentation of a draft declaration Discussion Announcement of

final declaration

12:30-14:30 Lunch - Discussion about the result and future of the after

symposium

Moderator: Lee Mi-kyung(MP, Chairperson, Associa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Studying the 'Comfort Women' Issue)

14:30-16:00 Visit to the 'Sharing House' for 'comfort women'

16:00-18:00 Meeting with the victims, Video viewing

Moderator: Yang Mi-kang (General Secretary,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18:00-19:30 Dinner & Closing

19:30-21:00 Return to Seoul

SEPT. 18: DEPARTURE FROM SEOUL

Publication Address

In commemo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UN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e have prepared this international seminar in order to strengthen solidarity for the promotion of women's human rights and protection of their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ased on a sincere examin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women's human rights in Asia.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reaffirms the fact that "all people are equal in terms of integrity and rights, and have the right to protection by the law without discrimination". However, crimes against humanity are being committed in armed conflict situations all over the world, dealing a huge blow to the integrity and rights of civilians. Furthermore, despite special regulations on women and children, they are often victims of organized and intentional violence and rape.

Efforts to ensure respect for the individual human rights and prevent violation of women's integrity in armed conflict situations are often confined to certain individual or nations, and complete solution is yet to be sought. The more an area is influenced by patriarchal ideology, the more difficult it is to restrain and find solution to violence against women and oppression of human rights. I believe this seminar is all the more meaningful because it has been jointly prepared by the research association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ivate organizations of Korea, as well as by the private organiza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n this seminar, we will call for the complete revelation of the truth as to the issues involving armed conflicts in Asia, including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We will also call for the payment of relief for the victims, and the punishment of those involved. Furthermore, we will work together to step up education to prevent the repetition of such crimes, and realign the domestic law. I especially look forward to strengthened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ivate organizations for the promotion of equality, peace and human rights.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all the participants from foreign countries, who have attended this seminar for the past two days despite their busy schedule to give outstanding keynote speeches. I would also like to thank all the participants who took part in the discussions. I sincerely hope that the "Documents" will be widely used by all those who are interested in peace and human rights.

September 1998

- Associa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Studying the 'Comfort Women' Issue
- Korea Women's Hot Line
-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 Friedrich-Ebert-Stiftung
-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Keynote Speech]

WOMEN'S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

Theo van Boven

Introduction

This year marks the fiftie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is landmark document was proclaim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s a common standard of achievement for all peoples and all nations." The history of rights has always given prominence to the rights of the privileged, leaving the majority of people outside its spectrum: the voiceless, the powerless, the destitute, the exploited, the neglecte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as meant, however, to inaugurate a new era, an era in which peoples of the world and all human beings would move from exclusion to inclusion. We are still far removed from fulfilling this objective. The pattern of exclusion still persists and prevails in the world at large and in many - if not in all - national societies. What also persists and prevails is man's inhumanity to man and woman, to all living creatures and man's ruthless exploitation and disregard of the world's precious resources. Armed conflicts between nations and in particular within national borders as well as systematic violence continue to cause immense suffering. There is, however, at least one basic difference with the past: more rapid and elaborate reporting through media networks and greater sensitivity in sectors of civil society about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issues. This Symposium on Women's Human Rights in Asia is an illustration of such sensitivity. This gathering is part of a worldwide movement of awareness building, empowerment and rededication.

The United Nations

In my presentation I will speak from the background and perspective of the United Nations. I have been closely associated, in various capacities, with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rogramme over a

period of more than thirty-five years. I have often doubt in my mind about the relevance of the United Nations. The organization has offered blueprints for a better world and a better life, echoing those magnificent and inspiring words which constitute the opening phrase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e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determined to save succeeding generations from the scourge of war, which twice in our lifetime has brought endless sorrow to mankind, and to reaffirm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and of nations large and small...". The idealist in my own heart can only be excited by such words but the sceptic in my mind who has become sadder and wiser after some thirty-five years, may qualify or even denounce these phrases and blueprints as sheer rhetoric. We all have moments of doubt and we are all shaken between periods of hope and vision and moments of despair and resignation. Nevertheless, I still keep enough faith in those forces who continue to turn to the United Nations for guidance and assistance, who feel that the United Nations may be helpful and instrumental in changing patterns of injustice, who call on the United Nations with the urgent plea "Don't abandon us", as I experienced while on a UN fact-finding mission in Latin America. We owe it to these forces and these people to strengthen the United Nations and to defend the causes which the United Nations is expected to uphold and to serve.

Two Developments

Before going into the subject assigned to me, i. e. women's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 I would like to point to two developments which I consider highly relevant in the broader context of this subject matter. The first development I should highlight - and this aspect is of course very familiar to you - is the emphasis in recent years on the gender dimensions of human rights and on efforts to make these dimensions an integrated part of the human rights movement. As the Beijing Declaration of 15 September 1995 put it clearly and forcefully: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The second development which is becoming evident in human rights work is to identify not only human rights violations as facts but also to look for the persons behind the facts: the offenders and their responsibility

as well as the victim-survivors and their right to reparation.

Women's Human Rights

The first development,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feminization of the human rights movement, is marked by a series of global conferences of recent years, in particular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held in Vienna in June 1993 and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held in Beijing in September 1995, which succeeded in making women's human rights a priority issue of the global human rights agenda. Coalitions of women's groups and organizations with a forceful lobby capacity have been highly instrumental. Radhika Coomaraswam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gave in a Harvard Law School lecture an interesting overview of distinct lobbies that address several women's issues and concerns. She highlighted the women's lobby strongly interested in the problems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armed conflict and thus emphasizing the applicable principles of humanitarian law. The mass rapes and killings in Bosnia Herzegovina influenced this process and the lobby includes East Asian groups working with women who had been victim-survivors of the Japanese military's sexual slavery before an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Many of you are militants in this undertaking. A second lobby with strong roots in Africa and Asia was working on health and traditional practices such as female genital mutilation, dowry deaths and other customary practices of violence against women. A third lobby of North American, European and Latin American women concentrated on issues of domestic violence, rape and sexual harassment. A fourth lobby associated with Women Living Under Muslim Laws was focussing attention to the violation of women's rights resulting from religious extremism. And finally, a lobby from Southeast and East Asia dealt with issues of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and related forced prostitution. This broad women's movement, diversified as regards the areas of special concern but united in the major objective that human rights should encompass the experiences of women at all stages of their lives, has made a difference and is a striking phenomenon and a remarkable new dimension in the overall human rights movement.

Persons Behind the Facts

A second important development relates to the persons behind the facts. Over the years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has established a series of mechanisms - rapporteurs or working groups - with a mandate to investigate gross and massi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to report thereon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ese reports which identify facts and practices and indicate avenues and measures of correction and redress are potentially important tools for the restoration of human rights and for the prevention of further evil. But these devices often fail to address the responsibilities and the fates of human beings behind the facts and practices. The offenders may feel comfortable to shield behind the facts - they unjustly benefit from immunity and impunity - and the victim-survivors are ignored and suffer in silence. Therefore, additional and more personalized means and methods are required to do justice, as an urgent prescription of the rule of law, to the persons behind the facts.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at Nuremberg, set up after World War II to prosecute and punish the major German war criminals, stated quite correctly that war crimes are not committed by abstract entities but by human persons. At the same time victim-survivors should not be reduced to numbers or commodities. It is therefore a welcome development that more avenues are opened up,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for complaints procedures available to victims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 Such procedures which exist under a number of human rights treaties are increasingly resorted to and a similar procedure is presently elaborated in connection with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lso with respect to victims, a study was made and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were drawn up on the right to reparation resulting from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Let me just quote one provision from this set of principles and guidelines: "States have the duty to adopt special measures, where necessary, to permit expeditious and fully effective reparations. Reparation shall render justice by removing or redressing the consequences of the wrongful acts and by preventing and deterring violations. Reparations shall be proportionate to the gravity of the violations and the resulting damage and shall include restitution, compensation, rehabilitation, satisfaction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Having been deeply involved myself in this work on the right to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many of my colleagues, friends and myself would be very pleased if the UN General Assembly would endorse and approve these principles and guidelines before the end of this century. Already now, in their draft form, they are being quoted and utilized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On the other side of the spectrum,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offenders of basic human rights norm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s receiving increased attention. It is obviously the duty of States,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to prosecute and punish those responsible for international crimes but we live in a world where it is more likely that a hungry child who steals a loaf of bread gets punished than that justice is meted out to a dictator who is responsible for the killings of thousands of men, women and children. Nevertheless, the establishment in 1993 and 1994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for the Former Yugoslavia and for Rwanda and the recent adoption in July of this year in Rome of a Statute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e indications of a new trend. The creation of these institutions reflects the wish and the determination of broad secto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rongly supported by conscientious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to bring an end to impunity for the perpetrators of serious international crimes and to help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such crimes. I have highlighted these recent developments because of their potential impact on women's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 - the theme of my presentation - and because of their significance for the lives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Male Stereotypes and Domination

For putting in place norms and mechanisms for redress and accountability, the strong support of the women's movement is essential. Gender specific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ave been largely ignored. This state of affairs has to be remedied. It cannot be denied that public life, notably government, finance, economic and leg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but also religious institutions - is to a large extent the privileged domain of men.

The rules that govern these institutions and the codes of conduct and behaviour in this area were framed from the perspective of men. Radhika Coomaraswamy,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recalls in her most recent report that the masculinity cults that pervade military institutions are intrinsically anti-female and create a hostile environment for women. She illustrates the typical male character of the laws of war by referring to Article 27 of the 1949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which treats violence against women as a crime of honour rather than as a crime of violence. She then adds: "By using the honour paradigm, linked as it is to concepts of chastity, purity and virginity, stereotypical concepts of femininity have been formally enshrined in humanitarian law. Thus, criminal sexual assault, in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is linked to the morality of the victim. When rape is perceived as a crime against honour or morality, shame commonly ensues for the victim, who is often viewed by the community as "dirty" or "spoiled". Consequently, many women will neither report or discuss the violence that has been perpetrated against them". The "macho-culture" prevails in an open and sometimes more hidden fashion in most societies and in many sectors of life. Moreover, in many situations of male domination and male violence against women, sexist attitudes and sexual abuse and assault are compounded by racist mentality and racist behaviour in exactly the terms as the German nazis put it by using the notion of "master race". This convergence or rather this accumulation of sexist and racist behaviour is at the root of much violence against women in times of armed conflict, as was also sadly illustrated by the atrocious recounts of the sex slaves of the Japanese imperial army before an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Widespread Sexual Abuse in Armed Conflict

The gender perspective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is receiving increased attention. What remained hidden and unattended for a long time, is now brought to the public fore, largely due to the insistence of the women's movement and to women survivors who started to raise their voices.

The end of decades of silence at the massive and perverse sexual exploitation of Korean and other women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the many shocking reports of widespread use of rape, forced pregnancies as part of policies and practices of ethnic cleansing in territories of the former Yugoslavia as well as terrible information on brutality, massacres, rape and abduction of women and girls in Rwanda - all these histories and accounts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armed conflict have deeply shocked conscience and have shaken awareness. Similar practices are occurring in many places of the world. Radhika Coomaraswamy included in her most recent report to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a by no means exhaustive series of deeply tragic stories and testimonies of case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in times of armed conflict pertaining to Afghanistan, Algeria, Bosnia and Herzegovina, Indonesia, Guatemala, Haiti, India, Japan, Liberia, Mexico, China (Tibet), Peru, Rwanda, Sri Lank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ames of countries are associated with the names of victimized women and girls who in most cases remain anonymous and unknown but who now appear, for once, in a UN document. The widespread nature of suffering is also recorded in the publication of the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And Armed Conflict Situations held in Tokyo in autumn 1997. The Declaration adopted at that occasion on 3 November 1997 refers to the account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e rape of Nanking, the sexual brutality of tens of thousands of women at the hand of the Pakistani military forces during the Bangladesh war for Independence, the victimization of women through the spraying of toxic chemicals by US military forces during the Vietnam war, and more recently, the mass rape of women in former Yugoslavia and Rwanda, the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under the Indonesian military occupation of East Timor, the military administration of Burma, the Islamic fundamentalist violence against women in Afghanistan and Algeria, rape occurring around the US military bases, forced evictions during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Women Particularly Affected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drew already attention to the extent to which armed conflicts directly

and in a particular way affect women, girls and children. Women and children constitute some 80 percent of the world's millions of refugees and other displaced persons, including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nd it was stated at Beijing:

"While entire communities suffer the consequences of armed conflict and terrorism, women and girls are particularly affected because of their status in society and their sex. Parties to conflict often rape with impunity, sometimes using systematic rape as a tactic of war and terrorism. The impact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of women in such situations is experienced by women of all ages, who suffer displacement, loss of home and property, loss or involuntary disappearance of close relatives, poverty and family separation and disintegration, and who are victims of acts of murder, terrorism, torture, involuntary disappearance, sexual slavery, rape, sexual abuse and forced pregnancy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especially as a result of policies of ethnic cleansing and other new and emerging forms of violence".

It is obvious that many if not all of the practices I just referred to are gross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and that a substantial number of them ar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pplicable in armed conflict.

Enforcement of Law relating to Women

The enforcement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both 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s, lags far behind the enunciation of standards, in particular when the basic rights of women and girls are violated. Reparation to victims and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perpetrators were - and still are - more the exception than the rule. The reasons are legend. The general pattern and practice is a lack of willingness and disposition to render justice.

But in cases where justice was meted out, such as at the Nuremberg trials, rape was not prosecuted as a war crime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did

not contain any reference to rape. The Tokyo trials found some Japanese military and civilian officials guilty of war crimes, including rape, because they had failed to prevent the abuse, mistreatment, torture, rape, killing and other atrocities committed by their subordinates. It was not until the Fourth Geneva Convention of 1949 and the Additional Protocols of the Geneva Conventions of 1977 that more explicit legal protection was offered to women in time of armed conflict, at least in law but not necessarily in fact. However,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established by the Security Council in 1993, described the express inclusion of rape as a crime against humanity in the Statute of the Tribunal and the rule setting forth a victim-friendly evidentiary procedure for cases of sexual assault in the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of the Tribunal, as a watershed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in order to help victims of rape and sexual assault to testify at the Tribunal in The Hague, and to protect them, a Victims and Witnesses Unit was established within the Registry of the Tribunal. Similar provisions also apply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which has its seat in Arusha (Tanzania). These developments in relation to the two ad hoc tribunals, together with the women's lobby and the active support of authorities like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ad a clear bearing upon making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 gender-sensitive instrument. Having participated myself in the diplomatic conference, held in Rome in June-July of this year,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 take this opportunity to draw the attention to a series of aspects in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represent clearly a gender perspective and seek to ensure justice for female victims of crimes committed in armed conflicts. Before doing so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here in Seoul to the delegation of Korea who, at the diplomatic conference and in the preparatory stages leading to the conference, played in many respects a very constructive and forward-looking rol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Let me now mention a number of gender sensitive elements and notions included in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 Among crimes against humanity (article 7) are listed:

"rape, sexual slavery, enforced prostitution, forced pregnancy, enforced sterilization, or other forms of sexual violence of comparable gravity". The same article defines "forced pregnancy" as meaning "the unlawful confinement, of a woman forcibly made pregnant, with the intent of affecting the ethnic composition of any population or carrying out other grav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A further sentence follows saying that the definition shall not in any way be interpreted as affecting national laws relating to pregnancy.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for the purpose of the Statute the term "gender" is understood to refer to the two sexes, male and female, within the context of society.

b) Among war crimes (article 8) in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and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are listed: "committing rape, sexual slavery, enforced prostitution, forced pregnancy, enforced sterilization, or any other form of sexual violence also constituting a grave breach of the Geneva Conventions" or "also constituting a serious violation of article 3 common to the four Geneva Conventions" respectively.

c) The Prosecutor who may initiate investigations proprio motu may seek additional information from among othe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ther reliable sources and receive written or oral testimony at the seat of the court (article 15)

d) In the selection of judges States Parties shall take into account, among other factors, the need to include judges with legal expertise on specific issu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violence against women or children (article 37).

e) In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advisers shall be appointed with legal expertise on specific issu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exual and gender violence against children (article 43)

f) The Registrar shall set up a Victims and Witnesses Unit which shall provide protective measures and security arrangements, counselling and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for witnesses, victims who appear before the Court and others who are at risk on account of testimony given by such witnesses. The Unit shall include staff with expertise in trauma, including trauma related to crime of sexual violence (article 44)

g) More in particular the Court shall take measures to protect victims and witnesses and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ceedings as regards safety, physic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ignity and privacy. The Court shall have regard to all relevant factors, including age, gender, health, and the nature of the crime, in particular, but not limited to, where the crime involves sexual or gender violence or violence against children (article 68)

h) Finally, an elaborate provision is included regarding reparations to victims. The Court shall establish principles that this effect and it may make an order directly against a convicted person specifying appropriate reparations for victims, including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The Court may also order that the award for reparations be made through a Trust Fund to be established for the benefit of victims and their family members (articles 75 and 79).

To sum up, the gender perspective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inds explicit expression in the defini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in the role and in the office of the independent prosecutor, in the selection of judges, in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witnesses and in legal remedies for victims, notably in their entitlement to reparations which includes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This recognition of gender dimensions in the Statute of the Court and, more generally, the adoption of a fairly good legal basis for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y the United Nations diplomatic conference in Rome, are reasons for satisfaction. At the same time we should be aware that

the creation of this Court is only a step on a long road towards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international crimes which cause immense suffering to numerous people, notably women and girls.

It may still take years before the Court will become operational, but its existence may eventually make a difference.

Three Interconnected Strategies of Justice

In the concluding part of my statement I would like to stress the importance of three strategies of justice. First, the strategy of prevention ; second, the strategy of criminal responsibility ; third, the strategy of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It cannot be overemphasized that preventive means and mechanisms are absolutely crucial for the sake of averting armed conflicts and consequently for the protection of women and girls against abuse and violence in times of armed conflict. In the peace agenda of the world, preventive diplomacy and preventive action must have top priority. Among the preventive means to which civil society can highly contribute is peace research and peace education in relationship with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The current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offers a good opportunity and an appropriate platform to give concrete meaning and content to these preventive means in the area of education. Educational efforts should also include an important training component, in particular the training of military and law enforcement personnel so as to impress upon them the need to respect human life and the integrity of the human person. This training should also include systematic gender sensitization training.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quite rightly recommended that the training should provide information and guidance on how to identify sexual assault as a serious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outline gender-sensitive procedures in terms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nd address underlying attitudes of members of the forces which may lead to gender-insensitive action when operating in the field. Education and training, adapted to the cultural contexts of diverse societies but at the same time unequivocal in their emphasis on basic human

values, is an indispensable component of the strategy of prevention.

The strategy of criminal responsibility responds to the duty under international law that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cluding women'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must be duly investigated and brought to light, and that perpetrators are prosecuted and, if found guilty, are punished. While prosecution and punishment are important ingredients of this strategy, the revelation of the truth is perhaps even more essential as is recognized by several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s set up in countries deeply affected by conflict and violence. We have noted that steps have been taken to enforce criminal responsibility by mean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gain, it should be stressed that gender aspects must be fully incorporated in the applicable standards, in the legal procedures and in the protection of victim-survivors.

Finally, the strategy of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is aimed at the rebuilding of post-conflict situations. This strategy is in fact a strategy of prevention as well, since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should have as objective and effect that catastrophes and sufferings do not repeat themselves. Post-conflict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requires a broad range of measures and services, notably economic reconstruction, social rehabilitation, psychological counselling as well as structures of democratic participation. Reconciliation and healing are essential components of this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strategy and by the same token these components are clearly interlinked with the strategies of prevention and of criminal responsibility. It is my strong belief that genuine reconciliation and healing will not be attained unless the rights and legitimate interests of victim-survivors are recognized and acknowledged. These rights and interests of victim-survivors must find expression in policies of reparation encompassing a wide gamma of measures of compensation, rehabilitation and satisfaction. Ignor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victim-survivors is adding serious injustice to deep grief. This is true for all victim-survivors, notably those victimized by sexual violence during times of armed conflict. We are firm in our determination that such injustice is unacceptable and must come to an end.

Literature and Sources

- Radhika Coomaraswamy, *Reinventing International Law: Women's Rights as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Harvard Law School Human Rights Program, 1997.
- Radhika Coomaraswamy,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UN doc. E/CN.4/1998/54, Chapter I, *Violence Against Women in Times of Armed Conflict*.
- Indai Lourdes Sajor (ed.), *Common Grounds - 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and Armed Conflict Situations*, Asian Center for Women's Human Rights, 1998.
- Gay J. McDougall,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UN doc. E/CN.4/Sub.2/1998/13.
-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UN doc. A/CONF.177/20 and Add.1 (1995).
-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The Right to Reparation for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 Compilation of Essential Documents*, 1998.
- United Nations,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aper on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5 June 1998.
- United Nations, *Statute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CONF.183 (1998).

Career

Theo Van Boven(64) is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t the University of Maastricht(Netherlands). He i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he holds positions in several non-government organizations, among them: vice-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Geneva), vice-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 Rights(Strasbourg) and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International movement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Racism(Tokyo). Previously he was director of the United Nations Center

for Human Rights in Geneva and registra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n The Hague. He was also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Sub-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he served in that capacity as Special Rapporteur of the Right to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o van Boven is married and he is the father of a son and a daughter.

[Report 1] Report on Women's Human rights during war in Asia

Violence Against Women - South Asian Experiences

Nimalka Fernando

Violence against women in all its manifestation is criminal and has resulted in death, physical incapacitation and mental derangement. In India eight out of ten wives are victims of violence. These numbers do not reflect the actual problem faced by us many remain hidden. I do not hold the view that violence we face is cultural and personal. There is of course the predominant thinking in our part of the world that women should behave silently, suffer degradation and remain subservient. Religious and customary practices are often invoked to justify the oppression and repression of women.

Domestic violence in South Asia takes a barbaric form from bride burning to rape within marriage. In India the practice of Sati still is in practice despite that it is illegal/prohibited by law. Women die for not providing sufficient dowry ie. the amount of money a woman pay as a gift to the bridegroom. Often women commit suicide if a marriage fails due to the fact that the poor parents are unable to pay this amount. The situation of women in South Asia has worsened with the World Bank dictated Structural Adjustment process and 'globalisation'. Hundreds of women are drawn into the labour market as workers in the Free Investment/Trade Zones. I will share with you stories of these women who have to work from 6.00 am to midnight merely to receive US \$ 25 per month. If you do not do over time the amount will be less than this. The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have been well recorded by the Human Rights watch group. (I will send you few stories as annexures by end of this week).

The amjor concern I wish to focus is the harrasment faced by women continuously as a result of ongoing war situations in Sri Lanka and also across the India and Pakistan border. There are several struggles in India in the various States where militarisation processes have brought about extreme

violence against women.

Women as refugees faces displacement as well harassment as those belonging to the minority communities. In a conflict situation women are the most vulnerable. Women in the minority communities face rape. The community is put to shame by the majority forces in this manner. Experiences of women living along borders - within the country like in my own country Sri Lanka and also along borders of Thailand of Burmese women require no elaboration. In Sri Lanka the number of widows have increased in the war zone areas. These single women have become vulnerable. In a village situated in the North Central province in Sri Lanka where a military camp is situated it is reported that 60% of women have venereal disease.

Krishanthi Kumaraswamy a young student belonged to the Tamil community lived in Jaffna. She was passing through a check point after school. She never returned home. Her family members and a neighbour started looking for her. Her mother, brother and the neighbour too disappeared. Later on she was found raped and murdered. The others were also killed. Due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essure the State intervened to identify the officers involved and a case was filed. The accused have been now sentenced to imprisonment.

Career

President, International Movement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Racism

Situation of Women in Armed Conflicts: Burma, Kampuchea, and Thailand

Virada Somswasdi

Summary: The speaker will deliver a brief description on the situation of women in armed conflicts in the three Southeast Asian countries, i.e. Burma, Kampuchea, and Thailand. It will include issues on violations of women's human rights and role of state in violating and protecting those rights. Recommendations for action and policy intervention for women's organizations will be addressed.

Career

An academic feminist, graduated from Cornell Law School, U.S.A. in 1974

Present commitments:

- Associate Professor of Law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Chiangmai University;
- Director of the Women's Studies Center, Chiangmai University since 1986;
- A founder of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 now the Regional Coordinator;
- A member of the National Sub-commission on Fact-finding on Human Rights Violation in Thailand.

【Report 1】 Report on Women's Human rights during war in Asia

Recent Armed Conflicts and Afflictions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Asia : Korean Case

Chung Chin-sung

1. Sexual Violence Caused by Armed Conflicts and Patriarchism

War, while causing most serious misery of all, has been repeatedly waged throughout the human history. The twentieth century, in particular, witnessed four times as many wars as the last four centuries put together did and the type of wars during this period has become extremely destructive. While war between capitalists and communists is subsiding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world now looks safer than before, new types of armed conflicts are arising among different nations and ethnic groups these days. And sufferings of women seem to be most tragic consequences of these armed conflicts. For example, victims were mostly women and children when armed gangsters killed 70 Somali refugees in June 1992. The fact that women and children are the biggest victims of war cannot simply be explained by their physical weakness alone. It is also closely linked to patriarchy that systematically turns women into the class of 'socially the weaker'. War is a violent expression of patriarchy and an analogy can be drawn between sexual violence, basically a mechanism that forces women to obey men, and actions of the army who are set out to conquer the land. In addition, a weapon is both an important element of men's identity and a key that enables patriarchal system at the same time. Thus, when a war breaks out, all these violent elements are carried out as dreadful violence against women.

(1) Protagonist in Sexual Violence

At present, three types of wars are taking place ; traditional type of war among nations, war for the formation of a nation, in other words, a war for independence and civil wars among ethnic groups or religious groups within a nation.

Due to the homogeneity of its people, Korea hardly experienced the second and the third types of

wars. Instead, it suffered two types of armed conflicts, one triggered by the the invasion of other nations and the other caused by the violence of the state. And women were the biggest victims of these armed conflicts in Korea as in any other nation in the world. Cases of sexual violence by other nations in armed conflict include military sex slavery of the Japanese Imperial Army and sex crimes by the American military. And Cheju 4.3 Uprising in 1948, a series of incidents that took place right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and sexual violence during K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80 are examples of violence committed by the state. This paper looks more deeply into each of the above four cases.

(2) Pattern of Sexual Violence

Most common violence against women in wartime is, of course, rape, which can be categorized into intermittent rape, institutionalized rape and sexual violence in the form of prostitution. Among these, institutionalized rape has the form of forced prostitution or habitual rapes and one of the most stark examples of it is the violence against so-called 'comfort women'. Sexual slavery of women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was the epitome of wartime sexual abuse that the state and the military committed with the help of brothel operators. While a serious degree of sexual violence was witnessed during ethnic cleansing in former Yugoslavia, it was more the case of intermittent rapes rather than institutionalized violence systematically controlled by the state. As for prostitution, while it is not strictly 'forced', it's certain that a degree of violence is added to it under the circumstances of war. This is evidenced by a recent increase in sexual violence committed by American soldiers stationed in Korea.

On the other hand, while women go through the same wartime afflictions as men like forced labor, loss of family, psychological aftermath, injury and loss of house, the degree of suffering borne by women is more severe than men in patriarchal society.

(3) Violence of Patriarchism after Armed Conflict

As already mentioned, patriarchy is expressed as violence during wartime. However, what's worse